



대규모 전역급 종합훈련(2016년 2월)

특별부록

1.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210
2.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213
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219
4.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222
5.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25
6.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28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32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34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35
4. 남북 군사력 현황	236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37
6.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38
7.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239
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240
9. 남북 군사관계 일지	241
10.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251
1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253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54
13.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55
14.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59
15.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63
16.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64
17.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66
18. 병사 봉급 추이	267
19. 전환 및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268
20. 국방기구도	269
21.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271
22.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83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1. 추진 배경

한강하구 수역은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이하 유엔사 군정위)’¹⁾가 통제하는 수역으로, 지리적으로는 우리 측 김포시와 강화도, 북측의 황해도 남단과 잇닿아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남과 북이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민감한 수역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래 60여 년 동안 특별한 몇 차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남북 양측 모두 사실상 출입을 금지했던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어선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간헐적으로 이 지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을 해왔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불법조업 어선수가 급증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강하구 수역

2. 추진 내용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는 직접적인 단속 활동에 앞서 다각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정전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정경찰 운용에 대한 사항들을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하게 공조하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사 군정위의 특별조사반(SIT)’²⁾을 운용

1) 정전협정의 이행·준수를 협의·해결하는 기구
 2)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서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직(SIT : Special Investigation Team)

하도록 협조하였다. 유엔사 군정위는 특별조사를 통해 중국어선들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중국 어선들을 군정위의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민정경찰 투입을 승인하였다. 한편, 육상의 비무장지대(DMZ³⁾) 민정경찰과 달리 한강하구 수역의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 번도 투입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운용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합참과 유엔사는 공동 작전 계획 수립반(OPT⁴)를 구성하여 작전개념, 인원 편성 및 지휘 관계 등을 정립하고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 운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정경찰 작전 모습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 한강하구 수역은 남북 간 가시적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관리수역인 만큼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유엔사 채널을 통해 사전에 북측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였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을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주한 중국대사와 총영사에게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한중 외교채널'을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설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방부-주한 중국무관부 실무협의', 주중 한국무관부 등 국방 외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실질적 조치를 위한 불법조업 채증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에서 제공한 현장사진 자료들은 중국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정부에 제공한 채증자료



쌍끌이 이용 불법조업 실시 현장

삼을 들고 저항하는 모습

단속 회피를 위해 선명을 지운 선박

3) Demilitarized zone

4) Operation Planning Team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였다. 국방부와 국민안전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해경을 민정경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군·해경 합동 실무회의', '현장 작전토의' 등을 통해 군·해경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의 작전수행 능력을 극대화 하였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리를 위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 하였다. 이러한 제반 활동에 있어 국방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이 참가하는 유관부처 통합회의를 통해 작전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3. 주요 성과

2016년 6월 우리 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3년 만에 최초로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하여, 차단·퇴거·나포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였다.⁵⁾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작전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조치였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수역인 한강하구 수역의 특수성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중국 정부에 사전 설명하여 중국어선 단속활동 기간 중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였으며, 이는 중국 어선에게도 '한강하구는 통제수역으로 불법조업 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정부도 자국 어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해경합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당국에게도 정전협정의 준수와 이행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어선은 북방한계선 이북 북측 수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진입하여 왔으나, 우리 정부는 민정경찰 투입 조치를 통해 북측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한강하구 수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민정경찰 운용에 대한 북한의 수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단호한 입장을 천명⁶⁾하고 북한의 도발 빌미를 원천 차단하고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군사적 민감수역에서의 정전협정 존중·준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를 방지함으로써,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와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작전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적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었다.

4. 향후 추진

민정경찰 작전 투입 이후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진입은 크게 감소했으나, 우리의 대비가 소홀해진다면 언제든지 불법조업을 재개할 것이다. 우리 군은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며, 중국 정부 차원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5) 작전성과 : 나포 2척, 퇴거 54척, 재진입 차단 10척, 어구압수 등

6) 북한의 수사적 위협(2016년 6월 20일/조선중앙통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의지 천명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1. 개관

2015년 8월 4일 07:35분경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⁷⁾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군 장병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후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의 현장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열한 만행이었다. 우리 군은 응징차원에서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으며 8월 14일 북한은 이를 부인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북한은 전선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타격을 경고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여 나갔다. 8월 20일 오후 군사분계선 남방 우리 지역에 두 차례 포격도발을 감행하였고,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하였다.



목함지뢰

8월 22일 18:30분부터 24일까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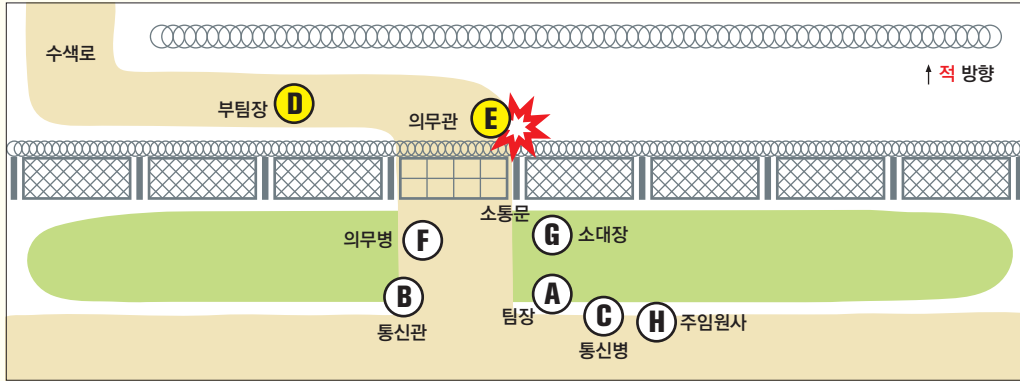
2.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 상황 |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근접 정찰, 의도적인 군사분계선 침범, 비무장지대 내 지뢰매설 등을 지속해왔다.

2015년 우리 군은 모든 전방사단 GOP 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음기 대비 태세점검과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는 수색과 매복 작전을 시행하고, 군사분계선에 근접하는 북한군 병력에 대해서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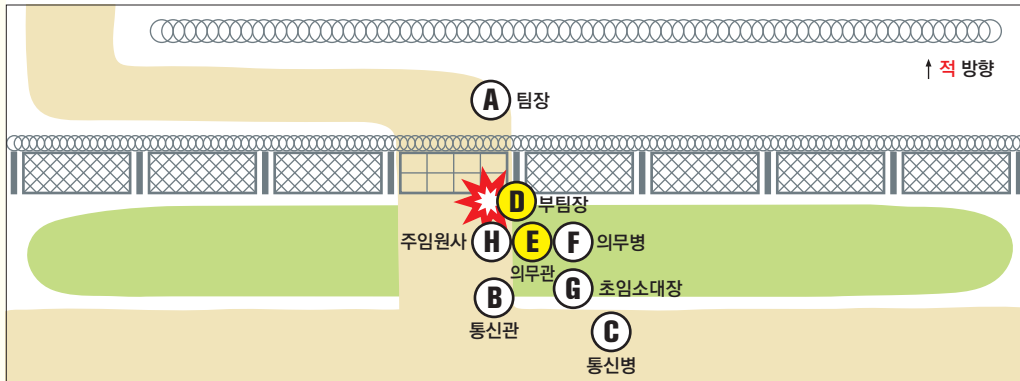
| 주요 조치 | 2015년 8월 4일 07:28분 우리 군 수색작전팀은 비무장지대 수색을 위해 추진철책 소통문에 도착하였다. 먼저 부팀장이 소통문을 열고 나가서 추진철책의 소통문 서측방 5m지점에서 전방경계를 하고 있었으며, 이어 의무관이 추진철책의 소통문을 통과할 때 철책 북쪽 40cm 지점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였다.

7) Military Demarcation Line



1차 지뢰폭발 상황

팀장 지시에 따라 부팀장, 의무병, 주임원사가 부상당한 의무관을 후송하는 도중, 07:40분에 철책 남쪽 방향 25cm 지점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하여 부팀장이 부상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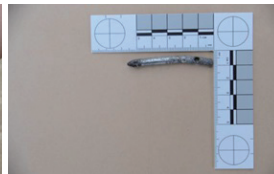


2차 지뢰폭발 상황

합참 합동조사반은 현장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의 잔해물로 추정되는 용수철 3개, 공이 3개, 목함지뢰 나무파편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였다.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이 포함된 조사단이 재차 조사한 결과 목함지뢰의 폭발물 잔해가 기존의 북한 목함지뢰와 일치하고, 1차 폭발지점에서



목함지뢰 나무파편



목함지뢰 공이

2발, 2차 폭발지점에서 1발이 폭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목함지뢰가 폭발한 지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북측에 매설되어 있던 북한군의 지뢰가 폭우 등의 영향으로 유실될 가능성⁸⁾은 없었으며, 소

8) 해당 지역은 남과 북저의 지형으로서 물골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만약 유실되었다면 추진철책 일대에 흙이나 수목 등의 부산물에 쌓여 있어야 하나 그러한 흔적이 없었음.



목함지뢰 설치 재현 모습



출입기자단 도발현장 방문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지뢰폭발 시 TOD채증 화면

통문 전·후방에 정교하게 매설되고 위장된 것으로 보아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월 10일 합동조사단은 지뢰폭발 사건을 '북한에 의한 도발'로 규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합참은 폭발 당시 열영상 감시장비(TOD)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대북 심리전 확산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였다.

8월 11일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관련 장성급 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장교 회담을 제의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8월 14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심리전 방송에 대해 징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합참은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자행할 경우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 평가 |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에 대한 군의 초동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하였다. 현장부대가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환자를 응급조치하고, 열영상 감시장비(TOD)로 2차 폭발상황을 채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높은 수준의 부대 단결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위기관리TF를 운영하고 통합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와 군이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미 양국은 8월 5일 이후 합참의장·연합사령관 공조회의와 공동 작전계획수립반(OPT) 운용을 통해 한미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을 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켜 공동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뢰도발이 명백한 북한의 소행임을 국제사회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군은 8월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에서도,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프 리엄가디언(UFG) 연습을 계획대로 실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현시하였다.

3. 북한의 비무장지대 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 상황 |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8월 15일 이후부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 무차별 타격으로 초토화 시 키겠다고 위협하였다.

우리 군은 8월 4일부터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천명하고, GOP 인군 부대는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 주요 조치 | 8월 20일 15:53분경 우리 군은 대포병레이더를 통해 북한군 122밀리 방사포가 위치한 지역 인근에서 우리 측 임진훈련장 방향으로 향하는 탄도궤적 1발을 포착하였다.

16:12분경 재차 폭음이 있었으며, 열영상 감시장비(TOD)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포연이 관측되었다. 열영상 감시장비(TOD) 영상 판독결과 북한군이 발사한 탄에 의한 포연으로 확인되어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 사격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포격도발을 부인하면서 남북관계개선 노력 의사를 천명한다는 내용의 당 중앙위원회 명의 대남전통문을 발송하면서도 48시간 내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것과 방송 수단의 전면 철거를 요구하였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개시한다는 최후통첩 성격의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을 보내왔다.

정부는 당일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⁹)에서 북한의 도발에 가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추가도발 시 즉각 대응할 것을 재천명하였다.

8월 21일 국방부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차 없이 단호히 응징하여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8월 22일 북한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제의하였고, 우리 정부가 이에 동의하여 18:30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있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많은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였고, 그들의 결의와 애국심이 부각되면서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온 국민을 한마음으로 단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8월 25일 정부는 '남북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장병 전역연기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2015년 8월)

9) National Security Council

남북 공동보도문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 옹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넷째, 북측은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5일 판문점

| 평가 | 우리 군은 대포병탐지레이더, 열영상 감시장비(TOD)를 통해 북한군의 포탄과 포연을 정확히 탐지하고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현장 부대는 북한군의 도발에 상응한 대응사격을 통해 우리의 대응의지를 피력하였으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한미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포격도발 시 합참의장·한미연합사령관 간 10회의 공조통화와 한미 공동 작전계획수립반(OPT)을 운용하여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 한미 해상·공중 무력시위 등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최근 북 도발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직접 발표함으로써 국가와 군의 단호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군의 동향과 군이 시행중인 대응조치를 언론에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군은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준비단계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협상지원 전략을 구상하고, 군사 분야 협상방안과 예상 의제별 대응·보충 논리를 발전시켜 북한에 대한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남북 군사협상 경험이 있는 국방부 대표가 '남북 실무대표접촉'에 참여하여 우리 주도의 「8·25 합의」 체결에도 기여하였다.

4. 의의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포격도발에 이어 '무차별 타격전', '심리전 수단 초토화', '군 입대 100만 명 탄원활동', '전시·준전시 상태 결정' 등 각종 수사적 위협과 행동을 지속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불안감을 증대시켰다.

우리 정부는 강경하면서도 일관된 입장과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정보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에 대해 단호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군이 일관된 지향점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응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과 군의 대비태세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공갈협박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결국 북한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서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대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립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의연함, 부상 장병들의 확고한 군인정신과 결연함 등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1.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설정 및 조정 경과

한국방공식별구역¹⁰⁾(KADIZ¹¹⁾)은 6·25전쟁 중 중공군의 공습에 대비하고 한국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태평양 공군이 1951년 3월 22일 설정한 구역으로 당시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남쪽으로는 마라도 남방 6.5NM(Nautical Mile)까지만 설정되어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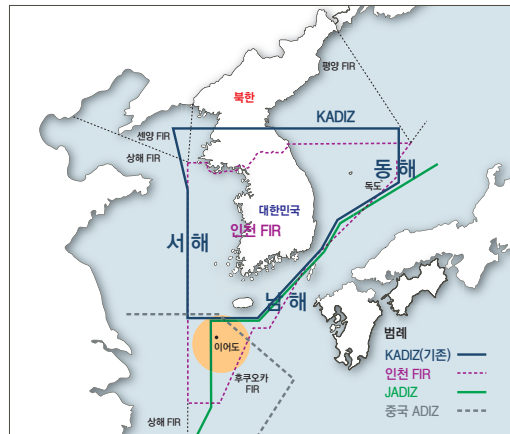
1969년 9월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면서 서쪽으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의 우리 비행정보구역(FIR)¹²⁾에서 조난 사고 발생 시 우리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색 구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마라도와 남해 황도 남방의 우리 영공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인천 비행정보구역(인천 FIR)과 일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의 문제는 한일 당사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협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노력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국익에 우선하고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2013년 11월 27일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전 설명하였다. 이후 국가안보정책회의에서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정부안을 확정하여 12월 8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5일 14시에 발효됨으로써 62년 만에 조정되었다.

조정 전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인천 FIR



10)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을 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비행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 의해 1950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약 30개 국가가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11)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1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 세계의 하늘을 분할하고 해당 국가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공역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은 1963년 5월에 설정되었으며, 제주도 남방451km(이어도로부터 255km)까지를 포함하고 있다.(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조정 경과	
1951년 3월 22일	미국 태평양 공군, 한국방공식별구역 설정
1969년 9월 1일	일본,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설정 (이어도 포함)
2008년 7월 28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발효.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국내법적인 근거 마련
2013년 11월 23일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2013년 12월 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발효



2.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의 의의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남해 홍도의 일부 영공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 주변 수역이 포함되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조정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영해와 관할수역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였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이 남쪽으로 확대됨으로써 제주도 남방구역에서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 항공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변국과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안보상황 변화에 국익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의 원칙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해결하여 국가의 자주성을 높이고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3.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이후 후속조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조정 이후 이를 유효화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첫째,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국내외에 유효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12월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발표 이후 12월 10일 항공고시보에 게재하고, 12월 12일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를 통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록한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을 발간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조정되었음을 국내외에 알렸다.

둘째, 방공식별구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방공식별구역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사작전 수행 및 주변국과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장거리 레이더 등 탐

지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데이터링크 원격 통신소를 재배치하는 등 확장된 남쪽 경계선까지 원활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당지역에서는 항공통제기(E-737)의 운용횟수를 증가시키고, 탐색구조 훈련 등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사적 능력을 배가함으로써 확장된 구역에 대한 실효적 관리의지와 능력을 국내 외에 인식시키고 있다.

넷째, 한·중·일의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4년 3월 양국 간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첩구역 진입 시 비행정보 교환방법과 중첩구역에서 미식별된 항공기에 대한 전술조치 절차에 합의하였고, 정기적인 국방협의 채널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도 상호 항적정보의 교환과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해·공군 간에는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등 중첩된 방공식별구역 및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1.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가. 구역 : 북위 39°00' 동경 123°30' - 북위 39°00' 동경 133°00'
 - 북위 37°17' 동경 133°00' - 북위 36°00' 동경 130°30'
 - 북위 35°13' 동경 129°48' - 북위 34°43' 동경 129°09'
 - 북위 34°17' 동경 128°52' - 북위 32°30' 동경 127°30'
 - 북위 32°30' 동경 126°50' - 북위 30°00' 동경 125°25'
 - 북위 30°00' 동경 124°00' - 북위 37°00' 동경 124°00'
 - 시작점

나. 고도 : 지표 ~ 무한대

부칙 <제2013-449호, 2013. 12. 1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5일 14시부터 시행한다.



제주 남방 상공에서 초계비행 중인 공군 항공통제기(E-737)와 F-15K 전투기 편대



이어도 관할수역을 기동탐색 중인 해군 초계함과 P-3C 대잠초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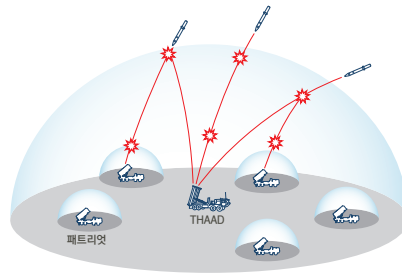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1. 사드체계란 ?

사드체계는 사거리 3천km급 이하의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고도 40~150km 고도에서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이 20여 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로 핵심시설 위주 방어의 작은 우산이라면 사드는 지역방어가 가능한 거대한 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드체계



패트리엇과 사드체계 방어범위 개념도

2. 사드체계 배치 및 부지결정 과정

| 사드체계 배치 결정 | 한미연합사령관은 2016년 2월 2일 미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사드체계 배치 협의를 공식 건의하였고 한미는 2월 7일 공식협의 개시를 발표하였다. 3월 4일 한미공동실무단이 출범하였으며, 7월까지 선정된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과 현장실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한미 합동회의 및 각국 단독의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7월 4일 사드체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배치부지 가용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7월 7일 한미안보협의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8일 한미가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사드 배치 한미 공동실무단 출범(2016년 3월)

| 부지 결정 | 7월 13일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지역을 건의하고 한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배치 지역을 발표하였다. 8월 22일 성주군이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지역 내 제3부지에 대한 가용성 검토를 공식요청 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은 해당지역과 협조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지 가용성에 대해 평가하였고 9월 29일 성주 달마산(성주 CC)을 최종부지로 확정하였다.

3. 사드체계 배치 시 군사적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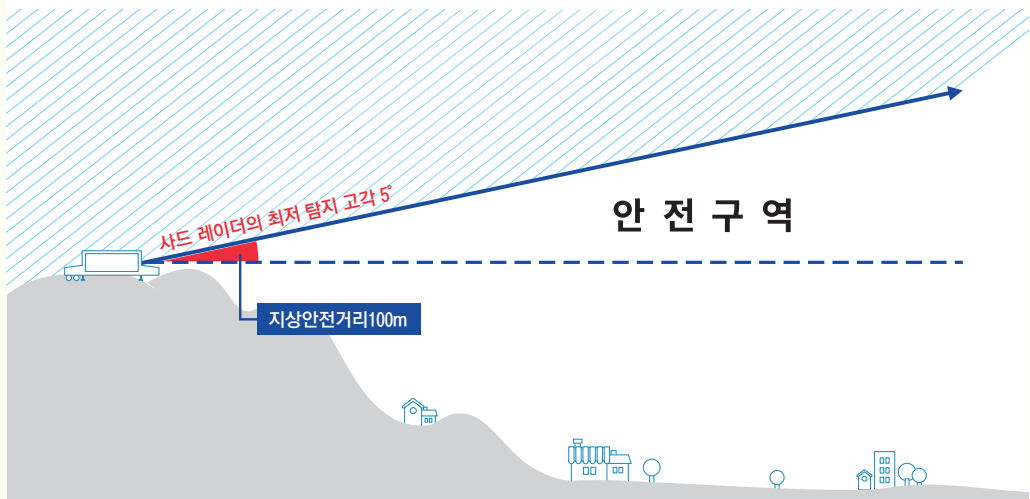
|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체계 | 사드 미사일은 2005년부터 미국에서 실시한 11차례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하는 등 현존하는 미사일방어 체계 중 가장 요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11회 중 8회가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3회가 노동미사일과 같은 중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험으로 배치 목적에 맞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 북한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 | 사드는 4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 성공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며, 훨씬 더 넓은 지역(남한지역의 1/2에서 2/3 범위)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 패트리엇 증강을 통해 수도권 방어력 강화 | 특히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계열로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더 유용한 요격무기체계이며 현재 중부 이남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할 수도 있어 수도권 방어능력이 현재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

4. 사드 레이더 안전성

|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산 정상에 설치, 하늘 향해 빔 방사 |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지상 안전거리인 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의 레이더 빔은 기저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서 5도 이상의 각도 위로 방사되기 때문에 기지 밖의 주민들과 농작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

| 안전거리 밖 전자파 안전성은 여러 차례 입증 | 2013년 4월 사드체계가 배치된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경우 사드 포대 앞쪽 약 2~3km 지점에 세계적 관광 명소(코코팜 가드비치, 리티디안 비치)가 위치하고 있고, 주변지역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자파 관련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괌 기지에서 실시한 전자파 측정결과 1.6km 지점에서 측정된 값은 인체보호기준의 0.007%에 불과했으며, 인원통제 구역에서 측정한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의 약 0.33~5.38%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간의 군부대 운영에서 전자파 등의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사드체계 배치 이후에도 안전한 운영은 계속될 것이다.



사드체계가 배치된 괌 앤더슨 공군기지

5. 향후 추진

사드체계 배치는 성주 달마산 부지 공여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절차와 설계·시설공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이며, 한미는 2017년 중에 사드체계 배치를 완료하여 작전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사드체계 배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들을 지키는 힘!
주한미군 사드배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의미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을 정하는 조약이다. 협정에는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하는 경로, 교환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관의 자격, 교환된 정보의 용도, 보호 의무, 관리 방법 및 파기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 체결 현황 |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¹³⁾을 체결하여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3개 국가 및 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몽골을 포함한 10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현황(2016년 12월 기준)

체결 국가(33개 국가+1개 국제기구)		체결 추진 국가 ¹⁴⁾ (10개국)
협정(20개국)	약정(13개국+1개 기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일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북대서양조약기구(국제기구),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베트남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2. 추진 경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1989년에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가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을 계기로 양국 모두 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2011년 양국 국방부장관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국내 협정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체결직전에 중단되었다.

13) 협정은 국가 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서의 조약에 해당하며, 약정은 정부기관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우리 국내법상 자신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로서의 기관 간 약정에 해당함(외교부 '알기쉬운 조약업무(2006. 3.)',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2007. 10.)' 참조)

14) 체결 추진 국가 중 독일-인도네시아와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국가 간 조약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2016년 들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20여 발의 미사일 발사 등 엄중 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여,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과 대응태세 보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우리 군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군의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검토와 유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6년 10월 27일에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정부는 11월 1일과 11월 9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11월 14일 3차 협의에서 양국은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아 11월 23일 국방부장관과 주한일본대사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였다. 서명 후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협정이 발효되었다.

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

이 협정은 양국 정부 간에 상호 제공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규정하며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대국으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밀분류와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제4조) 또한, 군사비밀을 제공한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제공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제6조) 그 외에도 군사비밀을 전달할 경우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할 것(제9조), 군사비밀정보를 전달시 갖추어야 할 보안요건(제12조), 제공한 군사비밀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제17조) 등 협정 체결당사국 간 군사비밀의 교환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목적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비밀분류	각국에 상응하는 동일 비밀등급 표시(한국 : 군사㉑급비밀/군사㉓급비밀, 일본 : 극비·특정비밀/비)
보호원칙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인원접근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자격(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정부 공무원)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이행 등
정보전달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전달
시설보안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하는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
보안요건	문서·매체, 장비, 전자전달시 보안요건 및 절차
파기	파기 방법 규정(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
분실·훼손	모든 분실·훼손 가능성에 대해 제공당사국에 즉시 통지 및 상황조사 등
분쟁해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야만 해결
개정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가능
기간·종료	1년간 유효,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 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

4. 협정체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북한은 핵 능력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자하여¹⁵⁾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첩보 수집·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을 보유한 일본과 영상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적·분석하고 핵 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동해는 일본 수역과 가깝고 레이더,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의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¹⁶⁾할 수 있게 되어 북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사안별로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본과의 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하다.

5. 향후 추진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15) 2016년 국방예산은 일본 5조 541억 엔(약 50조 2400만 원), 한국 38조 7,995억 원임.

16) 정부는 일본과의 정보 교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 체결된 한미/미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기반으로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을 경유하여 한일 간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교류를 시행하였음.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Mungyeong Korea 2015 6th CISM World Games)

1. 대회 소개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가 2015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문경을 비롯한 포항, 김천 등 경상북도 8개 시·군¹⁷⁾에서 개최되었다. 군인들의 평화의 축제인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¹⁸⁾)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이며, '스포츠를 통한 우정(Friendship through Sport)'이라는 정신 아래 4년 주기로 개최되는 134개국 군인들의 올림픽이다. 대회 규모로는 올림픽(204개국), 유니버시아드(167개국) 대회에 이어 3번째로 큰 국제 종합스포츠 대회이다. 이번 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7개국, 7,045명이 24개 종목¹⁹⁾에 출전하였다.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회식(2015년 10월)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별 분산 개최에 따른 제약 요인들을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본보기가 되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54명의 상이군인이 개회식에 함께 입장하고 양궁과 육상경기에 참여하였으며, 비회원국 15개 국가도 대회에 초청하여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개회식 상이군인 동시 입장

참가국별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경기 중에는 응원을 하고 경기 막간에는 K-POP, 부채춤, 태권도 시범 등의 문화공연과 지역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세계의 친한화(親韓化)와 한류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2. 대회 준비

2011년 5월 제66차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총회에서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다. 2012년 1월 세계군인체육대회

17) 문경,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예천

18)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19) 육군5종, 해군5종, 공군5종, 오리엔티어링, 고공강하, 농구, 축구, 골프, 핸드볼, 배구, 양궁, 사이클, 마라톤, 근대5종, 요트, 사격, 수영, 육상, 트라이애슬론, 복싱, 유도, 태권도, 레슬링, 펜싱

조직위원회 창설 준비단이 발족되었고, 8월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회 상징물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케팅 활동을 준비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알차게! 멋지게! 일류명품으로!' 라는 구호 아래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부합되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4년 10월 8일부터 8일 간 프레대회 개념으로 치러진 제61회 세계군인 육군5종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대회 개최 및 운영능력을 입증하였다.



국무총리 현장점검(2015년 9월)

3. 성과와 의의

| 대회 결과 | 대한민국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4개 종목(일반종목 19, 군사종목 5)에 참여하여 종합 4위로 역대 최고성적을 기록하였다.

역대 세계군인체육대회 현황

회차	대회년도	개최국	개최지	참가국	종목	우승국
1	1995	이탈리아	로마	84	17	러시아
2	1999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80	18	러시아
3	2003	이탈리아	카타니아	81	11	중국
4	2007	인도	하이데라바드	101	15	러시아
5	201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13	20	브라질
6	2015	대한민국	경북 문경	117	24	러시아

* 역대 최다 신기록을 수립(CISM 신기록 49개, 한국 신기록 3개)하였고, 2016 리우 올림픽 참가자격을 획득(162명) 하였음

무엇보다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마지막 분단국에서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세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회가 열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대회는 약 1,09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가장 경제적인 국제 대회로 기록되었고, 인명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대회였으며 메르스 창궐지역 선수단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으로 청결한 대회로 치러졌다.

| 소도시에서 개최한 국제대회 | 인구 8만 명의 중소 도시인 문경시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범도민 다짐대회, 통합 발대식, 경기장과 숙박시설의 통합 운영,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 저비용·고효율의 효율적인 국제대회 모델을 제시 | 이번 대회 예산은 총 1,653억 원(국비 50%, 지방비 30%, 마케팅 수익 20%)이었으며 이는 제5회 브라질 대회 예산인 2조 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다. 조직위원회는 시설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했다. 문경으로 이전한 국군체육부대 시설을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문경 인근 경북지역 8개 도시로 개최지를 분산하여 신규시설을 전혀 짓지 않았다. 영천 육군3사관학교와 괴산 학생군사학교 등을 선수촌으로 이용하고 캠핑카를 이용한 카라반을 활용하여 시설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 선수단이 동참하는 개·폐회식 행사 |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의 어울림’이란 슬로건에 맞게 ‘보여주는 대회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대회’가 되도록 기획되었다. 우리의 전통민요 ‘쾌지나 칭칭나네’ 가락에 맞추어 군인 동작으로 고안된 ‘솔저댄스’를 정복을 입은 참가선수들과 관람객이 모두 함께 따라하고 각기 다른 군복을 입은 117개국의 선수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평화의 울림으로 전해졌다.

| 최첨단 IT 기술 활용 | 문경 인근 8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는 기록 계측 시스템(TNS-Time and Score) 등 IT 기술을 접목한 대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문경 인근 8개 도시 간 물리적 거리의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었다.

조직위원회는 매일 아침과 저녁 종합상황실에서, 경기장, 선수촌, 본부 호텔, 공항을 하나로 연결해 각 지역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대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입·출국 정보, 선수 참가 기록, 선수촌과 배차 관리 등 선수단 입국부터 출국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써 완벽한 대회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문경선수촌 개촌식



캠핑카를 이용한 문경선수촌



개회식 '줄다리기' 행사



세계군인체육대회 종합상황실

| **한류문화의 확산** | 함께 어우러지는 국제 대회를 만든 데에는 서포터즈, 참가국 별 파견된 군인 인력,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크게 기여했다.

대회 처음으로 각 참가국별 100~200명 정도의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예비역 장군이나 퇴직 외교관 등이 직접 단장을 맡아 각 나라 선수들에게 한국 도착에서부터 경기장 응원, 한국 문화 체험까지 머무는 내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이번 대회에 파견된 서포터즈는 3만 3,800여 명²⁰⁾, 군인 인력은 4,800여 명, 일반 자원 봉사자는 2,300여 명이었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환대에 만족함을 표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헌신으로 대회 내내 미담사례들이 이어졌다.

곳곳에서 실시된 문화 행사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영천과 괴산, 문경 세 곳의 선수촌에서는 매일 저녁 K-POP, 부채춤, 태권도 공연 등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한국문화체험장과 CISM Club에서는 한국 문화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경북 지역을 비롯한 맞춤형 관광 체험도 선수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선수촌에서 개최된 한국문화 체험

20) 지역주민 21,360명, 군 1,890명, 학생 7,900여 명, 기업 2,700여 명 등

주변국 군사력 현황

병력

단위 : 명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총병력	1,381,250	798,000	2,333,000	247,150
육군	509,450	240,000	1,600,000	151,000
해군	326,800	148,000	235,000	45,500
공군	319,950	145,000	398,000	47,100
기타	해병대 185,050 해안경비 40,000	공수 34,000 전략 80,000 지휘/지원 151,000	로켓군 100,000	통막 3,550

육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단/여단	10/45	4/89	23/128	9/6
전차(대)	5,884	20,200	6,540	687
보병전투차량(대)	6,559	13,900	3,950	68
정찰차(대)	1,900	2,200	650(경전차)	162
장갑차(대)	24,377	12,000	4,150	792
견인포(문)	1,242	13,165	6,140	422
자주포(문)	1,469	6,120	2,280	166
다련장포(문)	1,205	4,070	1,872	99
박격포(문)	2,483	4,130	2,586	1,103
대전차 유도무기(기)	SP 1,512	SP 미상	SP 480	SP 37
지대공미사일(기)	1,207	1,520	312	700
헬기(대)	4,200	1,278	760	412
항공기(대)	222	-	8	8

해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잠수함(척)	57	49	61	18
	전략핵잠수함(척)	14	13	4	-
	항공모함(척)	10	1	1	-
	순양함(척)	22	6	-	-
	구축함(척)	62	18	19	38
	호위함(척)	4	10	54	9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57	89	199	6
	소해함(척)	11	45	49	27
	상륙함(척)	30	19	50	3
	상륙정(척)	245	30	73	8
	지원함(척)	71	625	171	28
	전투기(대)	956	72	346	-
	헬기(대)	720	195	111	131
해병 전력	해병사단(개)	3	여단 3	여단 2	-
	전차(대)	447	250	73	-
	정찰차량(대)	252	60	-	-
	상륙돌격장갑차(대)	1,311	1,000	-	-
	병력수송장갑차(대)	2,467	400	152	-
	야포(문)	1,506	365	40	-
	대전차미사일(기)	95	-	-	-
	UAV·ISR(대)	139	-	-	-
	항공기(대)	445	-	-	-
	헬기(대)	455	-	-	-

공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략폭격기(대)	157	139	-	-
폭격기(대)	-	-	120	-
정찰기(대)	ISR·UAV·CISR 454	85	51	17
지휘기(대)	4	8	5	-
전투기(대)	FTR·FGR·ATK 1,890	872	1,468	348
수송기(대)	686	432	325	61
급유기(대)	461	15	11	5
조기경보기(대)	AWE&C·EW 45	18	8	17
훈련기(대)	1,128	204	950	245
헬기(대)	161	669	53	46
민간예비(대)	553	-	-	-
전자전기(대)	ELINT 33	32	13	3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6」(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6년 2월), 「일본방위백서 2016」(2016년 8월)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015년 기준

국 가	GDP (억 달러)	국방비 (억 달러)	GDP 대비 국방비 (%)	병 력 (천 명)	국민 1인당 국방비 (달러)
대한민국	15,000	364	2.40	625	681
미 국	180,000	5,975	3.33	1,381	1,859
일 본	41,200	410	1.00	247	323
중 국	114,000	1,458	1.28	2,333	106
러시아	12,400	516	4.18	798	362
대 만	5,190	103	1.98	215	438
영 국	28,600	562	2.05	155	878
프랑스	24,200	468	1.93	209	702
독 일	33,700	367	1.09	179	454
이스라엘	2,990	186	6.22	177	2,310
이집트	3,000	64	2.13	439	72
사우디아라비아	6,320	819	12.95	227	2,949
호 주	12,400	228	1.83	57	1,001
터 키	7,220	83	1.16	511	105
말레이시아	3,130	47	1.51	109	155
태 국	3,740	54	1.44	361	79
싱가포르	2,940	97	3.29	73	1,705
캐나다	15,700	140	0.89	66	399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6」(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6년 2월) 등 관련자료 종합

* 병력은 2016년 기준

연도별 국방비 현황

연도	국방비(억원)	GDP 대비 국방비(%)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1980	2조 2,465	5.69	34.7	46.2
1981	2조 6,979	5.47	33.6	20.1
1982	3조 1,207	5.49	33.5	15.7
1983	3조 2,741	4.85	31.4	4.9
1984	3조 3,061	4.25	29.6	1.0
1985	3조 6,892	4.23	29.4	11.6
1986	4조 1,580	4.08	30.1	12.7
1987	4조 7,454	3.95	29.6	14.1
1988	5조 5,202	3.83	30.0	16.3
1989	6조 0,148	3.68	27.3	9.0
1990	6조 6,378	3.36	24.2	10.4
1991	7조 4,764	3.13	23.8	12.6
1992	8조 4,100	3.08	25.1	12.5
1993	9조 2,154	2.97	24.2	9.6
1994	10조 0,753	2.75	23.3	9.3
1995	11조 0,744	2.58	21.3	9.9
1996	12조 2,434	2.54	20.8	10.6
1997	13조 7,865	2.60	20.7	12.6
1998	13조 8,000	2.63	18.3	0.1
1999	13조 7,490	2.38	16.4	△0.4
2000	14조 4,774	2.28	16.3	5.3
2001	15조 3,884	2.24	15.5	6.3
2002	16조 3,640	2.15	14.9	6.3
2003	17조 5,148	2.16	14.8	7.0
2004	18조 9,412	2.16	15.8	8.1
2005	21조 1,026	2.29	15.6	11.4
2006	22조 5,129	2.33	15.3	6.7
2007	24조 4,972	2.35	15.7	8.8
2008	26조 6,490	2.41	14.8	8.8
2009	28조 9,803	2.52	14.2	8.7
2010	29조 5,627	2.34	14.7	2.0
2011	31조 4,031	2.36	15.0	6.2
2012	32조 9,576	2.39	14.8	5.0
2013	34조 4,970	2.41	14.3	4.7
2014	35조 7,056	2.40	14.4	3.5
2015	37조 5,550	2.41	14.3	5.2
2016	38조 8,421	2.40	13.9	3.4

* GDP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10년 기준으로 재계산, 추경예산 기준

* 2015년은 한국은행 명목 GDP 잠정치, 2016년은 기획재정부 명목 GDP 예상치 기준

남북 군사력 현황

2016년 12월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병력 (평시)	육군		49.0만여 명	110만여 명	
	해군		7.0만여 명(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전략군		-	1만여 명	
	계		62.5만여 명	128만여 명	
주요 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7
			사단	43(해병대 포함)	82
			기동여단	15(해병대 포함)	74(교도여단 미포함)
		장비	전차	2,400여 대(해병대 포함)	4,300여 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대 포함)	2,500여 대
			야포	5,7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60여 기	발사대 100여 기(전략군)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10여 척	43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 대	810여 대
		감시통제기		6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AN-2포함)		50여 대	330여 대
		훈련기		18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90여 대	29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밀리를 제외하고 산출
- 질적 평가 표현이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남북 경제지표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북한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명목GNI(조 원)	1,490.8	1,565.8	34.2	34.5	43.7배	45.4배
1인당GNI(만 원)	2,956	3,094	139	139	21.3배	22.3배
경제성장률(%)	3.3	2.6	1.0	-1.1	-	-
무역총액(억 달러)	10,981.8	9,632.6	76.1	62.5	144.3배	154.1배
총인구(천 명)	50,424	50,617	24,662	24,779	2.0배	2.0배

* 출처 : 한국은행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 대신 사용 (GNI≒GNP)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014. 12. 1. ~ 2016. 12. 3.)

일 자	주요 내용
2015.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 "핵타격 수단 소형화, 다중화, 장거리미사일 정밀화" 등 주장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김정은, 핵보유국 및 수소탄 발언 -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 주장
2016.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핵실험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 - 검색 의무화, 무기 금수(禁輸), 개인 및 단체 제재, 자원 수출입 금지, 금융제재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 정부, 독자 대북제재 발표 -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강화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정부,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 - 노동자 송출 금지, 각종 투자 금지, 각종 거래 금지, 개인 및 단체 추가 제재 등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 핵실험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21호 - 석탄수출 통제(4억 불/750만 톤), 교역·금융 차단, 개인·단체 제재대상 확대 등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 정부, 독자 대북제재 발표 - 금융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기항 외국선박 입항조건 강화, 북한 방문 외국인 출입국 제한 등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정부(재무부), 독자 대북제재 발표 - 핵·미사일 관련 단체 16곳, 핵개발 의혹 인사 7명,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포함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개발 경과(2014. 12. 1. ~ 2016. 11. 30.)

일 자	주요 내용
2015. 3. 2.	• SCUD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5. 8.	•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발사 공개
2016. 1. 8.	•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발사 공개
2. 7.	•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포동 2호, 북측 : 광명성 위성발사 주장)
3. 10.	• SCUD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3. 15.	• 재진입 기술(삭마기술) 모의시험 공개
3. 18.	• 노동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3. 25.	• 고체로켓 엔진시험 공개
4. 9.	• 동창리에서 신형 ICBM 엔진 지상분출 시험 공개
4. 15.	• 무수단 미사일 1발 동해로 발사(실패)
4. 24.	•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발사 공개
4. 28.	• 무수단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실패)
5. 31.	• 무수단 미사일 1발 동해로 발사(실패)
6. 22.	• 무수단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1발 실패, 1발 부분 성공)
7. 19.	• SCUD 미사일 1발 및 노동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8. 3.	• 노동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8. 25.	•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발사 공개(부분 성공)
9. 5.	• SCUD 계열 미사일 3발 동해로 발사
9. 20.	• 동창리에서 정지위성 엔진시험 공개
10. 15.	• 무수단 미사일 1발 동해로 발사(실패)
10. 20.	• 무수단 미사일 1발 동해로 발사(실패)

제원

구 분	SCUD-B	SCUD-C	SCUD-ER	노 동	무수단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km)	300	500	1,000	1,300	3,000 이상	2,500	10,000 이상
탄두중량(kg)	1,000	700	500	700	650	500	650~1,000(추정)
비 고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시험 발사	시험 발사

* SLBM, KN-08/14 : 개발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구분	1695호 (2006. 7. 15.)	1718호 (2006. 10. 14.)	1874호 (2009. 6. 12.)	2087호 (2013. 1. 22.)	2094호 (2013. 3. 7.)	2270호 (2016. 3. 2.)	2321호 (2016. 11. 30.)
배경	北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 7. 5.)	北 1차 핵실험 (2006. 10. 9.)	北 2차 핵실험 (2009. 5. 25.)	北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 12. 12.)	北 3차 핵실험 (2013. 2. 12.)	北4차 핵실험 (2016. 1. 6.) /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6. 2. 7.)	北5차 핵실험 (2016. 9. 9.)
기본 입장	· 北 미사일 발사 규탄 · 미사일 모라토리움 위반에 심각한 우려	· 北 핵실험 규탄 · 비확산 및 평화·안정 위협에 우려 표명	· 北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 · 역내·외 긴장고조 우려	·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규탄	· 비확산과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핵실험 강력 규탄	· 北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강력규탄
WMD 활동 관련	·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중단 요구 · 미사일발사 모라토리움 재확인 요구	·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 · 7대무기: 전자,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 중단 요구	·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 · 추가발사 및 핵실험, 추가도발 중단 촉구	· 우라늄 농축 포함 핵실험·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중단 요구	· 핵·미사일 개발관련 교육훈련 금지 · WMD개발 사용가능 모든물자 차단 (Catch all)	· WMD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對中 석탄 수출 상한액·량 적용
무기 금수	· 미사일 관련 물품·기술 등이 북한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회원국에 요구	· 7대 무기류 및 WMD 관련 품목, 사치품목을 북한과 거래 금지 · 7대무기: 전자,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 모든 무기관련 물질, 기술 등 북한과 거래 금지 · 모든 무기 수출 금지 · 소형무기 제외 모든 무기 수입 금지	· 결의위반 품목 압류 및 처분시 폐기 등 가용한 모든 처분 방법 허용	· 對北기술지원 금지, 제3국 수출입 중개 서비스에도 적용 · 우라늄농축 관련물자 금수	· 불법물품적재추정시 입항·영공통과 금지 · 소형·재래식무기 포함 北무기 수출·입 금지 · 무기생산 가능물품 거래불허	· 핵·WMD관련 연구·개발 분야 기술협력 금지 · 재래식무기 관련 이중 용도품목 이전금지
화물 검색	-	· 금지품목을 적재한 북한 화물 검색	· 북한 항발 모든 화물을 검색	· 선박 검색 거부시 상황안내서 발간 지시	· 북한대리 개인·단체에 의해 중개·축진된 모든 화물 검색 결정 · 검색불응 선박 입항 금지 및 제재위 보고 의무화	·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 광물, 항공유 등도 포함 · 북한에 항공기·선박 및 승무원 제공 금지	· 對北 제재위에 의심 선박 입항금지, 자산 동결 등 권한부여
금융 제재	· 북한WMD관련 재정적 지원 이전을 금지하고, 관련행위 감시 요구	·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지정한 개인·단체에 금융제재	· 모든 WMD 관련 금융 제재 및 대북지원 금지	· 불법금융모니터링 · 제재대상의 대량현금 유통 등을 감시·통제	· 北은행의 지점설치 금지, 북한에 금융지점 설치 금지 · 공적 금융지원 금지 강화	· 핵·미사일 개발 연루 北 정부·노동당 자산 동결 · 北관련 공적·사적 금융 거래 금지 (은행지점폐쇄)	· 北외교관 금융계좌 對 제한 · 북한내 제3국 금융 기관 전면폐쇄 및 對 北무역 금융지원 전면 금지
의미	· 유엔 차원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 권고적 성격	· 실질적인 대북제재 이행 의무화	· 대북제재 이행 대상 및 범위 확대	· 대북제재 대상 및 품목 확대, trigger 조항포함 · 추가발사·핵실험시 중대조치 예고	· 통치기반을 약화 가능 제재 마련, 제재이행 대상·범위 확대 · 사치품, 외교관련책특권 등	· 對北제재 결의에 '북한 인권' 문제 최초 거론	· 기존 결의안의 예외사항이던 석탄 등 民生 목적의 교역 범위 축소를 통해 허점 (루프홀) 감소

남북 군사관계 일지

(2014. 12. 1. ~ 2016. 12. 3.)

북 측	일자	남 측
전선서부지구사령부 보도, '애기봉 등탑 점등식' 관련 비난	2014. 12. 21.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소니 해킹' 부인	12. 27.	
	12. 29.	정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 남북대화 공식 제의 * 2015년 1월 중 서울이나 평양, 기타 편리한 장소
김정은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 등 기존 주장 반복	2015. 1. 1.	통일부 성명,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의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람"
국방위 대변인 담화,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 요구	1. 7.	
조중통 보도, '연합훈련 임시 중단시 핵심임 임시 중단' 발표	1. 10.	
	1. 12.	박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남북대화 촉구 *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1. 13.	한미 연합해상훈련(~14. 동해)
유엔주재 차석대사, "진정한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시 선결조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1. 14.	
	1. 19.	통일·외교·안보부처 연두업무보고 * 박대통령, "北 호응할 수 있는 대화여건 마련 노력해야"
정부·정당·단체 연합 호소문,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정책 전환 촉구 * 1월 21일 청와대, 국회, 대한적십자사, 정당 앞으로 전통문 전달	1. 20.	
국방위 정책국 성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1. 25.	통일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관련 유감 표명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촉구
동해에서 함대함 미사일 4발 발사	2. 6.	
동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	2. 8.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당설립 및 해방 70주년 관련 결정서 채택 *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	2. 10.	
	3. 1.	박대통령, 3·1절 경축사, '남북이산가족상봉' 촉구 및 '남북철도연결' 제안
서해 남포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담화, KR/FE 연습 비난	3. 2.	KR/FE 연습 시작(~4. 24.) 국방부 입장 발표, "무모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조평통 성명, KR/FE 연습 비난 *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3. 3.	
동해로 지대공 미사일 7발 발사	3. 12.	

북 측	일자	남 측
	3. 17.	정부합동수사단, 한수원 원전해킹 北 소행 발표 * 北 고유 악성코드 사용, 北 IP 접속 흔적 발견 등
전선부대 공개통고, "대북전단 살포시 화력타격" 위협	3. 22.	軍 입장 발표, "도발시 단호하게 대처" 경고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천안함 재조사, 5·24 조치 해제" 주장 * '천안함 피격사건'과 '5·24 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	3. 24.	
판문점대표부 고발장, 천안함 5주기 관련 '美 책임론' 주장	3. 25.	
서해에서 남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	4. 3.	
평남 평원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4. 7.	
	5. 1.	정부, 남북 민간교류 허용 확대 발표 * 문화·역사·스포츠 분야 공동사업 추진
조중통,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김정은 방문 보도 * "주체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 오를 것"	5. 3.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 전통문, 我 해군함정 NLL 침범 주장 및 예고없는 직접조준타격 위협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	5. 8.	2함대사 명의 對北전통문 발송 * 심각한 유감 표명 및 도발적 언행 즉각 중단 엄중히 촉구
조중통, 'SLBM 시험발사 완전 성공' 보도 * 김정은 참관下 함남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북극성-1호 시험발사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 전통문,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라" 동해에서 함대함 미사일 3발 발사	5. 9.	
	5. 11.	통일부 대변인, "北 도발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 민간교류는 장려"
서해해상 야간사격훈련 * 對南전통문을 통해 사격계획 통보(5. 13. 15:00 ~ 5. 15. 24:00)	5. 13.	2함대사, "NLL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조성" 경고 및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 경고
연평도 부근 함포 및 해안포 사격훈련	5. 14.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핵타격 수단 소형화 단계, 도전하지 말라"	5. 20.	
국방위 정책국 성명,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공동조사 제안 조중통 대변인 성명, SLBM에 대한 국제제재 움직임에 '자위권 행사' 반발	5. 24.	통일부 입장 발표, "우리가 제안한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 이 과정에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
	5. 30.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아시아 안보회의), '3각 공조 강화 방안' 논의
국방위 대변인 성명, 탄저균 관련 비난 및 '반미 성전' 촉구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대화 관련 대남 비난	6. 3.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전략군 대변인 담화, 我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VIP 원색적 비난	6. 4.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6. 14.	

북 측	일 자	남 측
공화국 정부 성명,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 * 체제통일 포기, 북침전쟁연습 중단 등	6. 15.	통일부 대변인 성명, "대화에 전제조건 없어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비난	6. 23.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단속정 1척 서해 NLL 침범	6. 30.	전군주요지휘관회의 軍,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북한군, 중부전선 MDL 침범	7. 11.	軍, 경고사격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관계 파탄 책임 전가 VIP 비난	7. 15.	
	7. 17.	서울안보대화(SDD)에 북한 첫 초청 전통문 발송
조평통 서기국 보도, 서울안보대화 거부 시사 * "입으로만 뉘저대는 대화타령은 조소와 비난만 받을 뿐"	7. 19.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서해해상사격훈련 비난 및 백령도 조준사격 위협	7. 25.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경북 문경 개최)' 불참 통보	7. 31.	정부, "북한이 외국주재 대사를 활용한 입장표명은 부적절하며, 대화에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8. 5.	이희호 여사 방북(~8. 8.) 경원선 복원공사 착공
'평양시간' 발표 * 8. 15일부터 표준시간 30분 늦추기로 결정	8. 7.	
	8. 10.	합참, '北 DMZ 지뢰도발 사건(8. 4.)' 조사결과 및 '대북 경고성명' 발표 對北 확성기 방송 재개(17:00)
조평통 대변인 담화, "UFG 연습 강행시 군사적 보복" 위협	8. 12.	
외무성 대변인 담화, UFG 연습 비난	8. 13.	
국방위 정책국 담화, 'DMZ 지뢰도발' 부인 조선인민군 전선연합부대 공개담화, "민간단체 전단살포 보복" 위협	8. 14.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대북심리전 방송 무차별 타격" 위협 국방위 대변인 성명, UFG 연습 비난	8. 15.	
	8. 17.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등 관련 합의서 체결
연천지역에 포격 도발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 "8. 20. 17시부터 48시간내 심리전 방송 중지·철거 최후 통첩"	8. 20.	軍, 대응사격 전군 최고수준 경계태세 발령
전선지대 준전시상태 선포(최고사령관 명령) 외무성 성명, 지뢰도발 부인 및 포격전 비난 김양건 당비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회담 제의 전통문	8. 21.	합참 명의 답신 전통문,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 국방부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겠다"
	8. 22.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8. 24. 판문점) * 南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北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비서

북 측	일 자	남 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TV 출연,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를 '北의 일방적 승리'라고 선전	8. 25.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합의 * △당국회담 개최 △남측 군인 부상에 유감 표명 △확성기 방송 중단 △北 준전시상태 해제 △이산가족상봉 진행 △민간교류 활성화
국방위 대변인 담화, "고위당국자 접촉시 '유감' 표명은 사과 아니다"	9. 2.	
국가우주개발국장 기자회견,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시사 *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높이 날아 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	9. 14.	
신설 위성관제종합지휘소 CNN에 최초 공개	9. 23.	
당 설립 70주년 열병식 *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	10. 10.	
	10. 16.	한미 정상, '2015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
	10. 20.	남북 이산가족 상봉(1차, ~10. 22. 금강산)
어선단속정 1척 NLL 침범	10. 24.	남북 이산가족 상봉(2차, ~10. 26. 금강산) 軍, 경교통신 및 경교사격
	11. 2.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4D 작전계획' 승인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我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계획 비난	11. 22.	서북도서방어사령부, "계획된 사격훈련 정상 진행, 도발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
	11. 23.	연평도 포격도발 5주년,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 비난	11. 24.	
	11. 26.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 12. 11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 당국회담' 개최 합의
동해에서 SLBM 발사 시험	11. 28.	
	11. 30.	국방부, "北 SLBM 발사 시험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12. 11.	제1차 남북 당국회담, 합의 없이 종료(~12. 12.) * 北,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연계 주장
조중통 보도, 남북 당국회담 결렬 책임 전가 * "남측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회담 결실 없어"	12. 12.	
조평통 대변인 담화, "南, 남북회담을 결렬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비난	12. 15.	
	12. 18.	유엔 총회, 2년 연속 '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 채택
김정은 신년사, 핵 관련 미언급 *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	2016. 1. 1.	정부,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
4차 핵실험(10:30) 정부 성명,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 2015. 12. 15. 김정은 명령 하달, 2016. 1. 3. 최종 명령서에 서명	1. 6.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정부 성명, 北 핵실험 강력 규탄

북 측	일 자	남 측
	1. 7.	정부, 1. 8.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비정상적 사태' 적용)
조중TV, SLBM 사출 시험 영상 공개	1. 8.	對北 확성기 방송 재개(12:00)
	1. 10.	美 B-52 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1. 12.	정부, 개성공단 출입 '필요 최소 인력'으로 제한 * 1일 800명 수준에서 600~700명 수준으로
我 수도권 지역에 대남 전단살포 我 1사단 도라산 관측소 부근 무인기 침범	1. 13.	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야 할 것" 軍, 무인기 침투에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대응
외무성 대변인 담화, 對美 평화협정 체결 주장 및 확성기 방송 비난	1. 15.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국제기구에 통보 * 2. 8.~ 2. 25. 매일 07시~12시	2. 2.	
	2. 3.	정부 성명, "발사계획 즉각 철회" 촉구 및 "혹독한 대가" 엄중 경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간 수정 통보 * 기존 2. 8.~2. 25.에서 2. 7.~2. 14.로 변경	2. 6.	
장거리 미사일 발사(09:30) 특별 중대보도, '광명성 4호 성공적 발사' * "앞으로도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	2. 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및 정부 성명 발표 *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 국방부,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발표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500명까지 축소 발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2. 8.	軍,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2. 10.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
조평통 성명, '개성공단 폐쇄' 발표 * 군사분계선 전면 봉쇄,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육로 차단, 군통신선·판문점연락채널 폐쇄, 남측 인원 추방	2. 11.	
	2. 13.	한미연합 잠수함훈련(~2. 15. 동해)
	2. 15.	경찰청장, 청와대 사칭 e메일(1. 13.~14.) 北 소행 발표 * 2014년 한수원 해킹때와 동일 계정 확인
	2. 17.	美 F-22 랩터 4대 오산기지 전개
조중통 논평, 사드배치 관련 비난 * "주변나라들의 1차적 타격 대상이 될 것"	2. 19.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청와대·미본토 타격' 위협 *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통치기관, 2차 타격대상은 아태 지역 미군 기지들과 미본토"	2. 23.	
	2. 24.	합참 입장 발표, 도발적 행태 즉각 중단 촉구 *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할 것"
	3. 2.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 채택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6발 발사 * 김정은,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 강조	3. 3.	

북 측	일 자	남 측
정부 대변인 성명·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비난	3. 4.	
외무성 대변인 담화, KR/FE 연습 비난 *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	3. 6.	
국방위 성명, KR/FE 연습 비난 * "강력한 핵타격 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 위협 조평통 대변인 성명, KR/FE 연습 비난 * "만단의 선제타격태세에 진입한 상태" 위협	3. 7.	KR/FE 연습 시작(~4. 30.) 국방부 입장 발표 *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거망동' 즉각 중단" 경고
	3. 8.	정부, 독자적 對北제재 발표 * 개인·단체 금융제재, 외국선박 北 기항 후 180일 이내 국내 입항 금지 등 국정원, "北,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십 명 스마트폰 해킹" 발표
노동신문, 핵탄두와 KN-08 사진 공개 * 김정은,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 "필요한 핵물질들을 광광 생산", "이미 실전배비한 핵타격 수단들도 부단히 갱신", "주저 없이 핵으로 먼저 넘어 칠 것" 등 위협	3. 9.	국방부 입장 발표, "북한은 스스로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김정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 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 대기상태로 준비" 지시 조평통 대변인 담화, 我 독자적 대북제재에 반발 *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 무효, 남측 모든 자산 완전 청산 등	3. 10.	통일부 대변인 성명, "北 주장 절대 수용 불가"
총참모부 성명, KR/FE 관련 '쌍룡훈련' 비난 * "반공화국 상륙훈련에는 남조선 해방작전으로, 죽집게식 타격전술에는 우리식의 초정밀 기습타격으로 대응"	3. 12.	한미 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 軍 입장 발표, "도발시 북한 정권의 최고지도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 경고
	3. 13.	美 핵항모(존 스테니스호) 부산 입항
조중통, '탄도로켓 대기관 재돌입 환경 모의 시험에서 성공' 보도 * 김정은,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 지시	3. 15.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KR/FE 2부연습 비난 * "전인민적인 소탕전에 과감히 떨쳐나서게 될 것" 위협	3. 16.	
	3. 17.	軍,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첫 성공' 보도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노동미사일로 추정, 1발은 공중 폭발	3. 18.	
조중통, 상륙 및 반상륙 방어연습 보도(김정은 참관)	3. 20.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김정은 참관) * "신형 대공경방사포 실전배치를 앞두고 최종시험사격"	3. 21.	공군, 北 핵심 군사시설 정밀타격훈련
조평통 중대보도, 정밀타격훈련 관련 비난 *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상태" 위협	3. 23.	통일부 대변인 논평, "비열하고 천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

북 측	일 자	남 측
<p>조중통,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보도</p> <p>* 김정은,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겨낼 수 있는 탄도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주장</p>	3. 24.	<p>박대통령,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p> <p>*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지시</p> <p>합참,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 개최</p> <p>* "도발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히 응징할 것"</p>
<p>조중통,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보도</p> <p>* 김정은, "악의 소굴인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해야" 위협</p>	3. 25.	<p>'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p> <p>* 박대통령,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p>
<p>국방위검열단 대변인 담화, '서해수호의 날' 비난</p> <p>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최후통첩장</p> <p>* "최후통첩 불응시 청와대 선제타격" 위협</p>	3. 26.	<p>합참 작전본부, 北 최후통첩장 관련 軍 입장 발표</p> <p>* "북한의 도발행위는 북한 정권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p>
<p>조중TV, '청와대·서울 주요시설 타격 훈련' 동영상 공개</p>	3. 27.	
<p>원산 일대에서 내륙지방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p>	3. 29.	
<p>GPS 교란전파 최대출력 공격</p>	3. 31.	수도권·강원지역 GPS 위기대응 '주의' 단계 발령
<p>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p> <p>* 김정은,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무기체계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 참관' 보도</p>	4. 1.	국방부, GPS 공격 관련 對北 경고성명 발표
<p>'조선의 오늘', 장사정포로 청와대 등 주요 국가시설 공격 영상 방영</p>	4. 5.	<p>국방부 입장 발표, 北 장사정포 공격 영상 공개 관련 對北 경고</p> <p>* "북한의 도발적 언동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p>
<p>조중통, '신형 ICBM 대출력엔진 지상분출시험' 보도</p> <p>* 김정은, "핵공격 수단들의 다중화, 다양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핵에는 핵으로 단호히 맞서야" 강조</p>	4. 9.	
<p>조중통, 대연합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야간 실탄 사격훈련 보도</p>	4. 12.	
<p>동해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p> <p>* 상승단계에서 공중폭발</p>	4. 15.	
	4. 16.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성명 채택
<p>신포 앞바다에서 SLBM 시험발사, 대성공 주장</p> <p>* 김정은,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 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되었다" 주장</p>	4. 23.	
	4. 24.	유엔 안보리, 北 SLBM 시험발사 관련 언론성명 채택
<p>원산 일대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2발 발사</p> <p>* 발사 수초 후 공중폭발</p>	4. 28.	<p>박대통령, 이란 방문(5. 1.~3.)前 NSC 소집</p> <p>*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래는 없을 것"</p>
<p>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한미연합훈련 비난</p> <p>*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연습부터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p>	4. 30.	
<p>제7차 당대회 개막(~5. 9.)</p> <p>* 핵 보유국 주장下 남북대화화 협상 주장</p>	5. 6.	
	5. 8.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이 거론한 대화와 협상은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

북 측	일 자	남 측
정부·정당·단체 공동성명, 김정은 통일방안 관철 주장 *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책임적이며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5. 16.	
국방위 공개서한, 남북군사회담 호응 촉구	5. 20.	국방부 입장 발표, '先비핵화 조치' 촉구
선전선동부장(김기남) 담화, 남북대화 촉구 * "관계개선 의사가 있다면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인민무력부 전통문, 남북군사회담 실무접촉 제의 * 5월말 또는 6월초 편리한 날짜와 장소	5. 21.	
조평통 서기국 국장 담화, 군사회담 개최 촉구 * "해포기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 그만두고 대화에 나와라"	5. 22.	
	5. 23.	국방부 對北전통문,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 "핵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군사회담 제안에 매우 유감"
인민무력부 전통문, 남북군사회담 재촉구	5. 24.	
어선·단속정 각 1척 서해 NLL 침범 최고사령부 중대보도, 我 경고사격 비난 * "보복대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5. 27.	軍,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軍 입장 발표, "정상적인 작전활동에 北 억지주장"
총참모부 통첩장, "경고 없이 조준타격" 위협	5. 28.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 이동식 발사대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	5. 31.	
조평통 성명, 남북대화 관련 대남협박 * "정당한 제의를 거부한다면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	6. 2.	
인민무력부장(박영식) 담화, 상그릴라 대화에서 북핵문제 논의 비난 * "우리와 맞서려는 적대세력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 기관·정당·단체 연석회의,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 전민족적인 통일대화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	6. 9.	
	6. 10.	한강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를 위해 민정경찰 투입
조중통, 한강하구 민정경찰 투입 비난 보도 * "대결과 충돌위험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행동"	6. 20.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2발 발사 * 1발은 실패로 추정	6. 22.	
조중통, 중장거리 전략탄도탄로켓(화성-10) 시험발사 성공 보도 * 김정은, "선제 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 하여야"	6. 23.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도발을 계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
국방위 정책국 상보, NLL 관련 비난 * "NLL은 불법무법, 명분없는 유령선"	6. 25.	
남·북·해외 연석회의 개최 제의 * "8. 15. 전후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	6. 2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개최 * 국무위원회 신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등	6. 29.	
조평통 대변인 성명, 무수단미사일 성공 주장下 대북정책전환 요구	6. 30.	

북 측	일 자	남 측
정부 대변인 성명, '한반도 비핵화' 관련 비난 *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 "남 핵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 포함"	7. 6.	
	7. 8.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SLBM 1발 발사 * 공중폭발 추정	7. 9.	軍 입장 발표,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 어떠한 도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사드배치 비난 * "물리적 대응조치가 시행될 것"	7. 11.	
	7. 13.	사드, 경북 성주에 배치 결정
조평통 대변인 성명, 사드배치 비난 * "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핵보급을 없애려는 극악무도한 대결망동"	7. 14.	
	7. 15.	국방부 입장 발표, "오만방자한 위협적 언행 즉각 중단" 경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 * 1발은 스커드미사일, 2발은 노동미사일 추정	7. 19.	
조중통,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켓트 발사훈련 보도 * "남조선 작전지대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 "핵탄두 폭발조종장치 특정 시험"	7. 20.	
	7. 24.	NLL 인근에 '인공어초' 설치 * 유엔사 군정위, 사전 對北통보
해군 서해함대 보도, NLL 인근 '인공어초' 설치 관련 비난 * "서해 열점수역에서 계단식으로 확대강화되는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진압해 버릴 것"	7. 25.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추정) 2발 발사 * 1발은 발사 직후 폭발, 1발은 1,000여 km 비행 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낙하	8. 3.	
외무성 대변인 담화, 美전략자산 전개 관련 비난 * "핵위협과 공갈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	8. 17.	
조평통 대변인 성명, UFG 연습 비난 * "조선반도의 전략적 구도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 것을 엄숙히 경고"	8. 21.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UFG 연습 비난 * "선제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인 결전태세 견지"	8. 22.	UFG 연습 시작(~9. 1.)
조평통 대변인 담화, '8·25 합의' 관련 비난 * "8월사태의 교훈을 망각하고 도발을 걸어온다면 조국통일대전으로 역적패당을 씨종자 없이 소탕"	8. 23.	
신포 앞바다에서 SLBM 1발 발사 * 약 500km 비행, 일본 방공식별구역내 낙하	8. 24.	
판문점 경무장 경고, "판문점에서 감행되는 도발행위는 즉시적인 반격을 면치 못할 것"	8. 27.	
판문점대표부 백서, UFG 연습 비난	9. 2.	
	9. 4.	'북한인권법' 발효·시행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 * 약 1,000km 비행, 일본 방공식별구역내 낙하	9. 5.	

북 측	일 자	남 측
5차 핵실험(09:30) 핵무기연구소 성명,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	9. 9.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정부 성명, 北 핵실험 강력 규탄 참참,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 발표
조중통, 신형 고출력 미사일엔진 지상분출시험 보도 * 김정은, "몇해 안에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9. 20.	
	9. 21.	美 전략자산(B-1B) 2대 한반도 전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我 군사적 대응조치 비난 * "우리가 발사하는 징벌의 핵탄은 청와대와 반동통치 기관들이 있는 서울을 찢터미로 만들 것"	9. 22.	
리수용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 * "핵무력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	9. 24.	
	9. 30.	사드, 경북 성주CC에 배치 결정
	10. 1.	박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권유
노동신문 논평, 我 VIP 국군의날 기념사 비난 *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	10. 3.	
	10. 10.	한미 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10. 15.)
평안북도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 실패로 추정	10. 15.	
평안북도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 실패로 추정	10. 20.	
조중통, 我 심리전 수단 타격 위협 * "우리의 면전에서 함부로 설치지 말아야한다"	10. 29.	
조중통, 김정은 특수작전대대 방문 보도 *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의 인간 추물들 제거가 기본 임무"	11. 4.	한·미·영 연합 공중훈련 '무적의 방패'(~11. 10.)
조중통, 김정은 서해 갈리도·장재도 방문 보도 *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전투문건 승인"	11. 13.	軍 입장 발표, "도발시 강력 응징할 것"
아태위 대변인 담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비난	11. 17.	
	11. 2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비난	11. 25.	
	11. 30.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안보리 결의안 비난 *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	12. 1.	
조중통, 김정은 전선포병부대 집중화력타격연습 참관 보도 *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주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의 군사대상물과 반동통치기관들을 타격"	12. 2.	정부, 독자적 對北제재 발표 * 개인 36명, 기관·단체 35개 금융제재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담화, 南, 북침 전쟁도발 가능성 주장 * "백00 퇴진운동을 억누르며 여론을 안보문제로 돌리기위한 교활한 술책"	12. 3.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94	405	1,340	406	228	222	241	220	26	6
침투	1,977	386	1,011	311	167	63	16	21	2	0
국지도발	1,117	19	329	95	61	159	225	199	24	6

* 2016년은 11월 30일까지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2014. 12. 1. ~ 2016. 11. 30.)

일자	주요 내용
2014. 12. 5.	적 단속정,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2. 19.	북한 철선, 동해 독도 동방 NLL 침범
2015. 4. 21.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북방 NLL 침범
5. 16.	적 경비정,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6. 11.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북방 NLL 침범
6. 11.	적 경비정, 서해 소청도 동북방 NLL 침범
6. 12.	적 경비정, 서해 소청도 동남방 NLL 침범
6. 16.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 침범
6. 23.	적 단속정,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 침범
6. 30.	적 경비정,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7. 2.	적 병력, 강원 철원 지역 MDL 침범
7. 11.	적 병력, 강원 철원 지역 MDL 침범
8. 4.	적 병력, 경기 파주 지역 지뢰매설 도발
8. 20.	적 병력, MDL 이남 곡사포 및 직사화기 사격
8. 22.	적 소형무인기, 화천 전방지역 MDL 침범(2회)
8. 23.	적 소형무인기, 화천 전방지역 MDL 침범
8. 24.	적 소형무인기, 화천 전방지역 MDL 침범(2회)
8. 31.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동북방 NLL 침범
9. 8.	적 단속정, 서해 소청도 동남방 NLL 침범
9. 25.	적 단속정,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10. 24.	적 단속정, 서해 연평도 동북방 NLL 침범
11. 30.	적 경비정, 서해 소청도 동북방 NLL 침범

일 자	주요 내용
12. 14.	북한 어선, 서해 백령도 북방 NLL 침범
12. 14.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북방 NLL 침범
2016. 1. 13.	적 소형무인기, 경기 문산 전방지역 MDL 침범
2. 8.	북한 예인선,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2. 8.	적 경비정, 서해 소청도 동남방 NLL 침범
4. 10.	북한 어선,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5. 27.	적 단속정 및 어선,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6. 8.	북한 어선, 동해 거진 동방 NLL 침범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현황

구 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94	405	1,340	406	228	222	241	220	26	6
침투 도발	직접침투	1,759	381	990	300	38	50	0	0	0	0
	간접침투	179	0	0	0	127	13	16	21	2	0
	월북·남북자 간첩 남파	39	5	21	11	2	0	0	0	0	0
	소 계	1,977	386	1,011	311	167	63	16	21	2	0
국지 도발	접적지역 도발	507	7	300	51	45	51	42	7	4	0
	접적해역 도발	559	2	22	28	12	107	180	188	15	5
	공중 도발	51	10	7	16	4	1	3	4	5	1
	소 계	1,117	19	329	95	61	159	225	199	24	6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군사지휘소 및 정부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연합방위체제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 절차 연습 ·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비 한국 합참·주한미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능력 배양 ·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총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주요지휘관세미나 · 군사협조기구 운영 연습 등
키리졸브/독수리연습 (KR/FE)	지휘소 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 ·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 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연합작전지역내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 한미 연합실기동훈련 등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태극연습	전구급 지휘소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주도의 작전지휘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협을 대비한 작전수행 절차 연습
호국훈련	작전사급 야외기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작전수행 및 전력운용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지도발 및 전면전 관련 작계시행훈련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작전수행절차 적용 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화랑훈련)	권역별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평시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투·국지도발 대비작전 · 전시전환 · 전면전 대비작전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제 방산협력 협정(양해각서) 체결국 : 34개국

2016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미국	1988. 6.	태국	1991. 11.	스페인	1992. 3.	인도네시아	1995. 10.
영국	1993. 9.	필리핀	1994. 5.	이스라엘	1995. 8.	루마니아	1997. 11.
캐나다	1996. 5.	독일	1997. 11.	러시아	1997. 11.	베트남	2001. 8.
네덜란드	1999. 6.	터키	1999. 11.	베네수엘라	1999. 12.	파키스탄	2006. 5.
호주	2001. 8.	방글라데시	2004. 1.	인도	2005. 9.	에콰도르	2010. 1.
우크라이나	2006. 12.	콜롬비아	2008. 5.	이집트	2009. 12.	노르웨이	2010. 9.
우즈베키스탄	2010. 2.	페루	2010. 6.	UAE	2010. 9.	체코	2015. 8.
덴마크	2011. 5.	폴란드	2014. 5.	칠레	2015. 8.		
핀란드	2016. 6.	헝가리	2016. 7.	프랑스	2016. 8.		

기타 방산협력 관련 협정 체결 현황

2016년 12월 기준

구분	국제기술협력협정 (12개국)	품질보증협정 (23개국)	가격 정보 제공 협정(4개국)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인도, 콜롬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리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반부록 13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5년 11월 2일, 서울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민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5년 11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 대장이 제4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2015년 한미 정상회담 계기 「한미 관계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국방통합협의체 회의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양자 안보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양 장관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행동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5월 8일(한국 시간) 북한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관련 수중 사출 시험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강행 의도를 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5메가와트 흑연감속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건설과 같은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5년 8월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이후의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

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외에도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완전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이후 추가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위기 상황과 관련된 군사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정보 공유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 것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가상실무연습(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달성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평시 연합 참모단 운용과 전시 한미 연합사단 편성을 완료한 것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은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군 장관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 경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민군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레바논과 남수단 평화유지활동,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 양 장관은 양국 정부가 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공병부대의 파견과 아프리카 지역 평화유지활동 관련 레벨 2급 의료 시설 지원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 미국은 유엔 활동에 참여하는 미군 장교의 수를 두 배로 늘리는 한편, 군수 지원, 건설사업 시행과 유엔의 능력 제고를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민국 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슬람국가(ISIL) 격퇴 노력 등을 통해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우주 상황인식, 가상실무연습(TTX)을 포함한 연습과 우주 운전자 훈련에 대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양국 장관은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통해 양국의 군사적 사이버공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군이 사이버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심화하고, 사이버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동맹의 공동사이버 훈련, 연습, 사이버 군사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다.
10. 양 장관은 스카파르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과 관련된 그 어떤 도전 요인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해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3. 양 장관은 지난 해 12월 한미일이 서명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억제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정보공유약정과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증진해

야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4. 양 장관은 방위비 부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국이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해 합의한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양국의 방산기술전략 및 협력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방부·외교부, 미.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협력체를 통해 양측은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카터 장관은 한민구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과 미합중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과 제40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일반부록 14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6년 10월 20일, 워싱턴

1.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6년 10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6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 대장이 제4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2015년 한·미정상회담 계기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서명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의 구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KIDD가 MCM 및 SCM과 같은 현존 위기협조 및 결심수립 매커니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KIDD 관련약정(TOR)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3. 양 장관은 올해 북한의 제4·5차 핵실험과 단거리·중거리·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의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정책과 행동이 지역 안정, 세계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차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 한·미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4·5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 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여,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

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5.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카터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국의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후 美 전략자산의 수차례 한반도 전개, 올해 초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美측의 B-52, 지상기반요격체(GBI) 발사시설, 미니트맨Ⅲ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연 등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였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킬 4D 작전개념 이행지침(CPIG, Concepts and Principles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서명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 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THAAD 배치절차의 지체없는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THAAD, 패트리엇 포함)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9. 양 장관은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그 어떤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한·미 해군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전 연습 등 한·미 해군훈련의 범위와 시행을 확대하고 참모협조를 강화하여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카터장관은 세계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2억 5천 5백만 달러의 아프간 군경 역량강화와 사회·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기여 공약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ISL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카터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공약한 것을 평가하였다. 더불어, 카터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CPWG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11.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안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보장 강화, 우주상황인식, 우주협력 TTX 분야에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 도전에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노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협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위해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정례적인 양자회의를 통해 이 연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로봇과 자율기술 협력을 포함한 새롭고 혁신적인 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을 통해 한·미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브록스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3.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14.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부대 이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올 해 첫 번째 美 전투부대가 험프리 기지로 이전하였고 2017년에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 사령부분부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해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였다. 양 장관은 3국이 2016년 6월에 실시한 미사일 경보훈련(PACIFIC DRAGON)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1월과 9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행위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3국간 외교 및 국방 분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계속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6.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부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난 7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DTSCG를 통해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8. 한민구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8차 SCM과 제41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9차 SCM을 2017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¹⁾

2016년 11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독일	1994. 5.	우즈베키스탄	2008. 6.	페루	2011. 12.	체코	2015. 2.
캐나다	1995. 5.	일본	2009. 4.	호주	2011. 12.	콜롬비아	2015. 3.
이스라엘	1995. 8.	스웨덴	2009. 7.	태국	2012. 3.	불가리아	2015. 5.
러시아	1996. 11.	요르단(조약)	2009. 10.	중국	2012. 7.	투르크메니스탄	2015. 5.
터키	1999. 11.	싱가포르	2009. 12.	사우디(조약)	2013. 2.	파라과이	2016. 1.
몽골	1999. 12.	리투아니아	2010. 2.	인니(조약)	2013. 10.	에티오피아	2016. 5.
쿠웨이트	2004. 11.	인도	2010. 9.	필리핀	2013. 10.	우간다	2016. 5.
브라질(조약)	2006. 3.	카자흐스탄	2010. 9.	폴란드(조약)	2013. 10.	에콰도르	2016. 7.
우크라이나	2006. 9.	베트남	2010. 10.	아제르바이잔	2013. 12.		
UAE(조약)	2006. 11.	루마니아	2010. 10.	뉴질랜드	2014. 5.		
스페인	2006. 12.	가봉	2011. 10.	카타르(조약)	2014. 11.		

1) 의의 :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성격의 문서로서, 협력 원칙·분야·방식 등 포괄적 사항 규정
 내용 : 협력원칙(상호 호혜주의 등), 협력범위(군사정보·군인사 교류, 방산, 군수 등), 행정사항(비용부담, 효력발생 등) 등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16년 11월 기준

구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유엔 관련 기구	UN 총회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1945. 10.)	한국 (1991. 9.) 북한 (1991. 9.) • 유엔총회 6개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국제 안보 관련 의제 토의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	
	유엔 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1952. 1.)	한국 (1991. 9.) 북한 (1991. 9.) • 군축·비확산 주요 이슈 3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유엔총회에 보고서 제출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	
	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1962. 3.)	한국 (1996. 6.) 북한 (1996. 6.) •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다자 군축 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교섭을 통해 탄생 • 유엔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 매년 유엔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 무 기	핵확산금지조약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1개국 (1970. 3.)	한국 (1975. 4.) 북한 (1985. 12.) * 2003. 1. 탈퇴	•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68개국 (1957. 7.)	한국 (1957. 8.) 북한 (1974. 6.) * 1994. 6. 탈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협력 수행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83개국 (미발효)	한국 (1999. 9.)	•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 수중, 대기, 우주 등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 핵실험 금지
미 사 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38개국 (2002. 11.)	한국 (2002. 11.)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자발적 성격의 국제 규범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또는 획득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탄도 미사일 개발계획 지원 금지
생물 화학 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75개국 (1975. 3.)	한국 (1987. 6.) 북한 (1987. 3.)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을 전면 금지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생물 화학 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2개국 (1997. 4.)	한국 (199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도록 규정 *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2개국 (1997. 5.)	한국 (199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의 확인 및 사찰을 위한 집행 기구
재 래 식 무 기	무기거래조약 (ATT : The Arms Trade Treaty)	130개국 (2013. 6.)	한국 (201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23개국 (1983. 12.)	한국 1,2의정서 (2001. 5.) 5의정서 (200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1991. 12.)	한국 (199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재래식무기 이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증진
다 자 수 출 통 제 체 제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9개국 (1974. 8.)	한국 (199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확산금지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물질, 장비의 수출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48개국 (1978. 1.)	한국 (199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물질, 장비, 기술의 수출통제체제 NPT 회원국이 아니라도 가입 가능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 통제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 통제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42개국 (1985. 4.)	한국 (199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생물무기 관련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 통제 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5개국 (1987. 4.)	한국 (200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그리고 관련 장비, 기술의 수출·이전을 통제하는 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1개국 (1996. 7.)	한국 (199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 체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5개국 (2003. 6.)	한국 (200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총 13개국 1,104명

2016년 11월 30일 기준

구분		현재 인원	지역	최초 파병	교대 주기		
유엔 평화유지활동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29	티르	2007. 7.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93	보르	2013. 3.		
	개인 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7	스리나가	1994. 11.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7	주바	2011. 7.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2	다푸르	2009. 6.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2007. 1.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1	아비장	2009. 7.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라운	2009. 7.			
소 계		647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 단위	청해부대	302	소말리아 아덴만해역	2009. 3.	6개월	
	개인 단위	바레인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4	마나마	2008. 1.	1년
		지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2	지부티	2003. 12.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2001. 11.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트트가르트	2016. 3.	
소 계		311					
국방교류 협력 활동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46	알 아인	2011. 1.	8개월	
	소 계		146				
총 계		1,104					

병사 봉급 추이

단위 : 원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70년	900	800	700	600	1994년	11,700	10,400	9,300	8,400
1971년	1,030	920	800	690	1995년	12,100	10,700	9,600	8,700
1972년	1,200	1,050	900	800	1996년	12,700	11,200	10,100	9,100
1973년	동 결				1997년	13,300	11,800	10,600	9,600
1974년	1,560	1,370	1,170	1,040	1998년	동 결			
1975년	동 결				1999년	동 결			
1976년	2,260	1,990	1,700	1,510	2000년	13,700	12,200	10,900	9,900
1977년	2,890	2,540	2,170	1,930	2001년	19,600	17,700	16,000	14,800
1978년	3,460	3,050	2,600	2,320	2002년	21,900	19,800	17,900	16,500
1979년	3,800	3,300	2,900	2,600	2003년	23,100	20,900	18,900	17,400
1980년	3,900	3,400	3,000	2,700	2004년	34,000	30,700	27,800	25,600
1981년	동 결				2005년	44,200	39,900	36,100	33,300
1982년	4,200	3,700	3,300	3,000	2006년	72,000	65,000	58,800	54,300
1983년	4,500	3,900	3,500	3,200	2007년	88,600	80,000	72,300	66,800
1984년	동 결				2008년	97,500	88,000	79,500	73,500
1985년	4,600	4,000	3,600	3,300	2009년	동 결			
1986년	4,900	4,300	3,900	3,500	2010년	동 결			
1987년	5,100	4,500	4,000	3,600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300
1988년	7,500	6,500	6,000	5,500	2012년	108,000	97,500	88,200	81,500
1989년	8,300	7,000	6,500	6,000	2013년	129,600	117,000	105,800	97,800
1990년	9,400	8,200	7,300	6,600	2014년	149,000	134,600	121,700	112,500
1991년	10,000	9,000	8,000	7,200	2015년	171,400	154,800	140,000	129,400
1992년	10,900	9,800	8,700	7,800	2016년	197,000	178,000	161,000	148,800
1993년	11,300	10,100	9,000	8,100					

* 출처 : - 1983~2016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1970~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별표 2 병의 봉급표

전환 및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복무 형태		복무 기간	기본자격	복무 분야	수요부서/ 복무기관	설치 근거
전환 복무	의무경찰	21 개월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중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자	각종 치안업무 보조	기동대, 의경대, 검문소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	23 개월		해상치안업무 보조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의무소방원	23 개월		소방업무 보조	시도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사회 복무 요원	· 사회서비스업무 -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 · 행정업무지원	24 개월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 처분자 - 질병 등 보충역 처분자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환자구호 업무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환경 보호지원 등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병역법」
예술 · 체육 요원	예술	34 개월	- 국제대회 2위 이상 - 국내대회 1위 - 5년 이상 중요무형 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예술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병역법」
	체육		- 올림픽 3위 이상 - 아시아게임 1위 입상	체육 분야		
산업 기능 요원	현역	34 개월	기술자격·면허기준에 따라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공업, 광업,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에너지, 건설, 방위산업 분야	지정업체, 방위산업업체	「병역법」
	보충역	26 개월				
전문 연구 요원	현역	36 개월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 지정 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학문·기술연구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자연계 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	「병역법」
	보충역	26 개월				
공중보건역의사		36 개월	- 현역대상자 중 의무(법무, 수의) 분야 현역장교 미 편입자	농어촌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판정전담의사			- 의무(법무, 수의)사관 후보생 중 해당분야 현역장교 미편입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병무청	「병역법」
공익법무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 무요원 소집대상자	법률구조 업무	법무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방역업무	농림축산 식품부	「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법률」

국방기구도

국방 조직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및 개별법상 조직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장·위패봉안·추모식 등 위령행사 실시 참배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서울현충원 홍보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묘역·산림의 관리 및 운영
	국방홍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일보, 국방TV 및 국방FM 등을 통한 군 홍보 및 장병교육 국방뉴스, 시사보도물 제작 및 사이버 홍보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등
	국방전산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국방부 및 소속기관의 통신망, 전산장비 등의 획득·운영 신 정보기술의 연구, 습득, 전파 및 관리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별법상 조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기지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의 지원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대응 등
	지리피해자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자 및 유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그 밖에 지리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민원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전쟁기념사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 운영 전쟁 및 군사 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전쟁사 및 군사유물 연구, 호국인물 발굴 및 현양 및 기타 학예활동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 및 각종 관련 간행물의 작성·배부 등
	국방전직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역예정군인 전직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전역예정군인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통계 유지·분석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등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법령정비 현황(2014. 11. 1. ~ 2016. 11. 30.)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계
47	76	59	182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제12901호(2014. 12. 30.)	국방·군사시설이전의 정의에 "단일 주둔지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통합·조정"을 포함하고 세입 대상 재산을 특별회계 재산으로 귀속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903호(2014. 12. 30.)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감항인증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2904호(2014. 12. 30.)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2905호(2014. 12. 30.)	국가가 환수금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납입고지·독촉 등에 의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제12908호(2014. 12. 30.)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으로서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안을 개발하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2909호(2014. 12. 30.)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소집 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3214호(2015. 3. 11.)	질병·부상 등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공상 군인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3242호(2015. 3. 27.)	군 관사가 부족하여 대기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 전세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으로부터 입주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237호(2015. 3. 27.)	국군포로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제13241호(2015. 3. 27.)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으로부터 징수한 입주보증금을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에 포함시켜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의 민간주택 전세 대부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244호(2015. 3. 27.)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법적 활동 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그 기한 내에 최종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제13239호(2015. 3. 27.)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조치 근거 마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제13240호(2015. 3. 27.)	비군사화가 필요한 탄약 중 화약류 및 자탄류의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폐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제13238호(2015. 3. 27.)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3352호(2015. 6. 2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제13396호(2015. 7. 20.)	군인공제회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395호(2015. 7. 20.)	현행법의 단속항목에 피아식별띠를 추가하여 시종 유통을 차단하고 우리 군 작전상 문제점을 보완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3505호(2015. 9. 1.)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3504호(2015. 9.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 등은 허가 등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상담을 한 경우에는 관할부대장 등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3500호(2015. 9. 1.)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지원 연령 기준을 사관학교의 기준과 동일하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조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3501호(2015. 9. 1.)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502호(2015. 9. 1.)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군 내의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제13503호(2015. 9. 1.)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기밀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3506호(2015. 9. 1.)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해당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규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3507호(2015. 9. 1.)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3567호(2015. 12. 15.)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보장 관련 규정 마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3630호(2015. 12. 29.)	공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 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제13631호(2015. 12. 29.)	주기적인 기본권 교육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국방부장관이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병영 내에 잔존한 구타·가혹행위 등의 병폐를 근절하려는 것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제13632호(2015. 12. 29.)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00호(2015. 12. 31.)	귀환 국군포로에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3722호(2016. 1. 6.)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의 구성방식을 개편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4호(2016. 1. 19.)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공식별구역에 비행하려는 자의 비행계획 제출의 무 및 방공식별구역에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식별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2호(2016. 1. 19.)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의 결정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자가 원활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3773호(2016. 1. 19.)	현행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기준이 합참규정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심의결과의 투명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3775호(2016. 1. 19.)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0호(2016. 1. 19.)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
6·25전쟁 중 적후방 지역적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괄폐지 제13769호(2016. 1. 19.)	폐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6호(2016. 1. 19.)	현행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 사유에 상급 기관·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다른 기관·부대와 통합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3777호(2016. 1. 19.)	무기 등을 증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및 식품·약품 등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9호(2016. 1. 19.)	보상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이후 1년까지로 연장하고, 신청기간이 지나도 보훈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상대상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3780호(2016. 1. 19.)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대상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포함하여 수령의 편의를 도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4081호(2016. 3. 22.)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 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4180호(2016. 5. 29.)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보류자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함
군형법	일부개정 제14181호(2016. 5. 29.)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4182호(2016. 5. 29.)	제작사 등 계약대상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4184호(2016. 5. 29.)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법 제명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 설치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685호(2014. 11. 4.)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외사업 현장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함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5686호(2014. 11. 4.)	합동참모본부의 임무 중 군사력건설의 소요 제기에 관한 사항을 소요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732호(2014. 11. 19.)	병영생활 전문담당관이 되려는 제대군인은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5797호(2014. 12. 3.)	주거지원을 받는 국군포로가 거주를 이전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변동한 경우 국방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5798호(2014. 12. 3.)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정 제25822호(2014. 12. 9.)	국방전직교육원의 당연직 이사 및 수입에 필요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 제25823호(2014. 12. 9.)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 상한을 규정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 제25824호(2014. 12. 9.)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합동참모대학의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863호(2014. 12. 22.)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국외에 있는 연금수급권자의 신상 변동 신고대상을 외국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그 범위를 축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905호(2014. 12. 30.)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점점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군무원 교수에 대한 면직 근거를 마련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5906호(2014. 12. 30.)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신기술을 실험하는 데 필요한 군 시설·장비의 이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의 부담을 줄이고 그 신청절차를 간소화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 제25907호(2014. 12. 30.)	군인복지기금의 학자금대부계정에 따른 학자금 대부 업무에 국군재정관리단의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 대부 업무를 국군복지단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정 제25908호(2014. 12. 30.)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수중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잠수함 부대의 임무 확대 및 잠수함 전력 증강을 위하여 잠수함사령부를 설치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5948호(2014. 12. 31.)	국방보안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신설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964호(2015. 1. 6.)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044호(2015. 1. 12.)	탄약의 수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약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군견 또는 군마 등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084호(2015. 2. 3.)	해외파병 관련 교육 및 정책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평화활동센터를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090호(2015. 2. 10.)	해외체류자 등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6102호(2015. 2. 16.)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사이버작전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6101호(2015. 2. 16.)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149호(2015. 3. 17.)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군인자녀에 대하여도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168호(2015. 3. 30.)	국방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비 장교후보생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장려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195호(2015. 4. 14.)	전문연구기관이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제출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그 연구과제를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194호(2015. 4. 14.)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상한을 규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6193호(2015. 4. 14.)	지뢰사고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289호(2015. 6. 1.)	법무부·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347호(2015. 6. 3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및 자료의 범위 구체화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 제26394호(2015. 7. 13.)	군인이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고충사항 해결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393호(2015. 7. 13.)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심사사항 중 전사자 유해 보호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제26392호(2015. 7. 13.)	작전 및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계엄사령부 운영처를 작전처와 정보처로 세분화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개정 제26407호(2015. 7. 20.)	5년제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3학년 재학 중에 학군사관후보생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함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6490호(2015. 8. 19.)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의 병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6511호(2015. 9. 8.)	해군참모총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의무실장을 두도록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535호(2015. 9. 2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금의 지급항목을 운임, 일반, 숙박비 및 식비로 하고, 그 항목별 지급금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의 여비에 준하여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538호(2015. 9. 22.)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537호(2015. 9. 22.)	전사자 등의 구분기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536호(2015. 9. 22.)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추가하는 동시에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병을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포함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 제26554호(2015. 9. 25.)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교육감이 수립하여 공고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08호(2015. 10. 29.)	전상자 또는 특수직무 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36호(2015. 11. 13.)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국방시설본부령」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39호(2015. 11. 18.)	군사적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고시설, 축사·가축시설 등과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72호(2015. 11. 30.)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73호(2015. 11.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74호(2015. 11. 30.)	군무원의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의 비중을 높이고 경력비중을 낮춰 적용함으로써 군무원의 능력위주 인사관리를 보장
야전군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6734호(2015. 12. 22.)	재해 등에 있어서 병력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736호(2015. 12. 22.)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을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정함
해병사단령	일부개정 제26735호(2015. 12. 22.)	해병대의 예하부대인 해병사단의 사단장 및 부사단장을 해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補)하던 것을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함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정 제26772호(2015. 12. 3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및 공군북부전투사령부의 직할 또는 예하의 수송기·정찰기·훈련기 전력 중심의 비행부대를 통합하여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설치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공군전투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6773호(2015. 12. 30.)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지역중심으로 설치된 공군남부전투사령부와 공군북부전투사령부를 전력의 유형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투기 전력 중심의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설치
국방정신전력원령안	제정 제26771호(2015. 12. 30.)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연합작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방정신전력원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 분리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6857호(2016. 1. 6.)	공군본부의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 능력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변경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880호(2016. 1. 12.)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에 보직해임된 준사관 및 부사관을 추가하고,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심의를 위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설치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 제26881호(2016. 1. 12.)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에 대한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캄보디아와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68명에서 72명으로 4명 증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02호(2016. 1. 19.)	3등급 귀환 국군포로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중 월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변경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 제26939호(2016. 2. 3.)	육군교육사령부 및 합동군사대학교 등 각각의 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행하던 출입관리 및 경호·경비 등의 근무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97호(2016. 2. 29.)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의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복제령	일부개정 제26996호(2016. 2. 29.)	부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사관 계급장의 제식(制式)에서 무궁화 표지 부분의 무궁화 잎을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여 장교 계급장의 무궁화 표지 부분과 동일한 형태로 개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95호(2016. 2. 29.)	군무원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94호(2016. 2. 29.)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정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93호(2016. 2. 29.)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허가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담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060호(2016. 3. 29.)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절차와 재요양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079호(2016. 3. 31.)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자체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개발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제품생산을 위한 계약의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함
6·25전쟁 중 적후방 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폐지 제27084호(2016. 4. 5.)	폐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제27083호(2016. 4. 5.)	서식 용어를 구비서류에서 첨부서류로 순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7096호(2016. 4.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117호(2016. 5. 3.)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무상 대부 또는 양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정 제27264호(2016. 6. 28.)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 제27263호(2016. 6. 28.)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군인의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등의 세부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7342호(2016. 7. 19.)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344호(2016. 7. 19.)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을 추가하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중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343호(2016. 7. 19.)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위원에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개정 제27480호(2016. 9. 5.)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역자·퇴역자 및 예비역이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징벌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562호(2016. 11. 1.)	부동산, 권리 및 비소모품 등산인 징벌물에 대한 사용료의 보상기준을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면서 감정평가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까지 확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591호(2016. 11. 2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의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점등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618호(2016. 11. 29.)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619호(2016. 11. 29.)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0호(2014. 11. 3.)	서신 미봉함 제출 및 서신 내용 검열 대상인 군수용자를 마약류 군수용자, 조직폭력 군수용자 및 관심대상 군수용자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구체적으로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1호(2014. 11. 7.)	유해물질의 안전에 관련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방규격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거쳐 해당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군수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3호(2014. 11. 10.)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력조정평가과의 소관 업무로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신전력과를 정신전력정책과로, 인력관리과를 인력정책과로 변경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35호(2014. 11. 19.)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안전행 정부가 관장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 제836호(2014. 11. 19.)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안전행 정부가 관장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7호(2014. 11. 19.)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등에 따른 조직 개편 반영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8호(2014. 11. 19.)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안전행 정부가 관장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9호(2014. 11. 19.)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안전행 정부가 관장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
군인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 제840호(2014. 12.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여감이 있는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정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1호(2014. 12. 9.)	국방홍보원의 국방일보 인쇄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인력 2명을 감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42호(2014. 12. 10.)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국방대학교의 입학정원을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으로 나누어 규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3호(2014. 12. 12.)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위 정도에 따라서 1배부터 5배까지 사이에서 징계 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함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4호(2014. 12. 31.)	군장학생의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5호(2014. 12. 31.)	상이등급 판정 방법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고,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등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9호(2015. 1. 6.)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관리운영직군 10명을 기술직군 등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9호(2015. 1. 6.)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관리운영직군 10명을 기술직군 등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50호(2015. 1. 19.)	불용결정 된 군수품의 대여조건을 완화하여 그 대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용결정 된 군수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별도로 대여기간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851호(2015. 1. 21.)	정신질환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도 근시·원시·난시에 관한 사항을 보충역 판정기준에 추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52호(2015. 2. 6.)	전력자원관리실 소속 부서의 기능을 일부 조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53호(2015. 2. 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및 해산신고 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854호(2015. 2. 27.)	필기시험 과목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필기시험 배점을 50점에서 40점으로, 현역복무실적 관련 평가점수를 50점에서 60점으로 조정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55호(2015. 3. 5.)	의무·수의 장교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의무·수의 장교의 합격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56호(2015. 3. 26.)	방산원가 항목 중퇴직급여에 대한 원가 반영 하한액 삭제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857호(2015. 4. 1.)	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군 장려금 반환 대상에 추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58호(2015. 4. 16.)	징계부가금 등에 관련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60호(2015. 5. 26.)	국립서울현충원의 일반직공무원 복수직렬 범위에 전산 직렬 추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63호(2015. 7. 6.)	군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64호(2015. 7. 22.)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중 병기고를 삭제하고, 병영생활지도에 필요한 내무 지도실을 추가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개정 제865호(2015. 8. 4.)	학군무관후보생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군중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66호(2015. 8. 4.)	군중장교로서의 성품·기본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선발과정에 인성검사를 추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68호(2015. 8. 11.)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일부 조직 개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69호(2015. 9. 2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에 관한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마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70호(2015. 9. 25.)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872호(2015. 10. 19.)	군의 전투력 향상과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에 적용되는 질병 및 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강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73호(2015. 10. 26.)	관련 서식 정비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74호(2015. 11. 3.)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의 서식을 신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77호(2015. 12. 28.)	예비군 훈련의 보류 대상자에서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제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0호(2016. 1. 6.)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1호(2016. 2. 4.)	병영문화를 혁신하고 자질이 부족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조기 퇴출을 위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 대상,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전체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3호(2016. 2. 29.)	능력위주의 군무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점점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4호(2016. 2.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을 정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6호(2016. 3. 22.)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8호(2016. 3. 29.)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군인이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된 이후에 다시 재발하여 민간병원에서 재요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요양 승인 신청서의 서식을 신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9호(2016. 3. 31.)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등이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등 입찰 참가제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정비
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90호(2016. 3. 31.)	방위사업검증계획의 수립 및 사업검증에 관한 승인 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제891호(2016. 4. 1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94호(2016. 5. 25.)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역예정자나 제대 후 1년 이내인 제대군인을 조종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종준사관을 적시에 확보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893호(2016. 5. 30.)	「군인사법 시행령」의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96호(2016. 6. 17.)	군장학생 반납의 면제사유에 군장학생 본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선발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제898호(2016. 6. 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서식 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제897호(2016. 6. 28.)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기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세부사항, 군기문란 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군인고충심사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0호(2016. 7. 20.)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서약서 서식을 정하고, 시험 평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1호(2016. 7. 20.)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위치를 보고하는 시간 간격을 조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99호(2016. 7. 2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장 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4호(2016. 11. 29.)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등록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변경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5호(2016. 11. 29.)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점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계급의 평균 평점점으로 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육훈련 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성적 평점 산정 방법을 변경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6호(2016. 11. 29.)	국방분야 국가자격 중 헬기정비사를 기체, 기관 및 전자·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심해잠수사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며, 항공장구관리사를 낙하산 및 생활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는 한편, 수중발파사를 신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9호(2016. 11. 30.)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기 위해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10호(2016. 11. 30.)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기 위해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2급 박철규	1급 성석호

위원장 	김영우(67년생, 경기 포천시가평군) 3선(18·19·20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YTN 기자, (전)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제1사무부총장	본관 421호 O) 784-1364 788-2721 F) 788-3685
--	---	---

입법조사관
4급 김태규
4급 이현종
4급 성소미
4급 이상묵
5급 이상홍
5급 최미경

2016년 12월 8일 기준

새 누리 당	 경대수(58년생,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재선(19·20대) 서울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회관 941호 O) 784-3978 788-2009 F) 788-0110	더 불어 민 주 당	 이철희(64년생, 비례대표) 초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회관 923호 O) 784-5081 788-2754 F) 788-0147
	 김학웅(61년생, 경기 안성시) 3선(18·19·20대) 중앙대 경제학과, 예결특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회관 427호 O) 784-3861 788-2028 F) 788-0168		 김병기(61년생, 서울 동작구갑) 초선 경희대 국민윤리학과, 국정원 근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	회관 721호 O) 784-1323 788-2004 F) 788-0101
	 백승주(61년생, 경북 구미시갑) 초선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방부차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회관 830호 O) 784-6731 788-2304 F) 788-0199		 김진표(47년생, 경기 수원시우) 4선(17·18·19·20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현)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회관 744호 O) 784-3808 788-2008 F) 788-0109
	 이정현(58년생, 전남 순천시) 3선(18·19·20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전)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홍보수석, (전)새누리당 최고위원, (현)새누리당 대표	회관 519호 O) 784-5031 788-2586 F) 788-0133		 우상호(62년생, 서울 서대문구갑) 3선(17·19·20대)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세대 총학생회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관 413호 본관 202호 O) 784-3071 788-2514 F) 788-0261
	 이종명(59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군사관학교(39기), 육군장교(대령 전역), (현)이종명 리더십 사관학교 대표, (현)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회관 337호 O) 784-2175 788-2252 F) 788-0363		 이종걸(57년생, 경기 안양시만안구) 5선(16·17·18·19·20대) 서울대 법과대학(공법학과), 변호사, 대한농구협회 회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회관 504호 O) 784-2783 788-2694 F) 788-0320
	 정진석(60년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4선(16·17·18·20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사무총장, (현)새누리당 원내대표, (현)국회운영위원장	본관 238호 O) 784-5071 788-2706 F) 788-0340		 진 영(60년생, 서울 용산구) 4선(17·18·19·20대) 서울대 법학과,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 IPU 집행위원 및 부회장,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회관 622호 O) 784-4087 788-2925 F) 788-0372
정 의 당	 김종대(66년생, 비례대표) 초선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현)정의당 원내대변인	회관 549호 O) 784-7612 788-2381 F) 788-0212	국 민 의 당	 김중로(50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군사관학교(30기), 서울대 사범대 졸,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보병 제70사단장, 동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국민의당 중앙위원회 의장, 제2정책조정위원장	회관 922호 O) 784-9161 788-2465 F) 788-0238
무 소 속	 서영교(64년생, 서울 중랑구갑) 재선(19·20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동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회관 928호 O) 784-8490 788-2427 F) 788-0227		 김동철(55년생, 광주 광산구갑) 4선(17·18·19·20대)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토위원장, (현)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회관 613호 O) 784-3174 788-2695 F) 788-0126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14. 9. 1. ~ 2016. 11. 18.)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29회 정기회 (2014. 9. 1.~12. 9.)	2014. 10. 7.~10. 27.	· 국정감사(국방부 등 63개 기관)
	2014. 10. 10.	· 국방부 현안보고(모 사단장 여군부하 성추행 사건 수사경과)
	2014. 10. 20.	· 국방부 현안보고(북한 경비정 NLL 침범관련, MDL 상황 등)
	2014. 10. 29.	· 국방부 현안보고(2015~2019국방중기계획)
	2014. 11. 12.	·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4. 11. 18.	· 병역사항 집중관리 관련 법률안 공청회 ·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 관련 법률안 공청회
	2014. 11. 20.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30건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2014. 12. 1.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계속)
	2014. 12. 9.	·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30회 임시국회 (2014. 12. 15.~ 2015. 1. 13.)	2014. 12. 29.	· 현안보고(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관련)
제331회 임시국회 (2015. 2. 2.~3. 3.)	2015. 2. 11.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 군용폭발물처리 제대군인 인도적 지원활동에 관한 청원
	2015. 2. 24.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 2014년 국정감사 및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제332회 임시국회 (2015. 4. 7. ~5. 6.)	2015. 4. 2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 등 3건 · 현안보고(북한상황 평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 방위사업청 반부패 대책 등)
	2015. 4. 21.	·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제332회 임시국회 (2015. 4. 7.~5. 6.)	2015. 4. 22.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015. 4. 2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제333회 임시국회 (2015. 5. 11.~5. 29.)	2015. 5. 11.	· 긴급 현안보고(북한 SLBM 발사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제334회 임시국회 (2015. 6. 8.~7. 7.)	2015. 6. 1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 · 현안보고(북한 상황평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최근 국방외교·협력 성과 등)
	2015. 7. 1.	·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4년 국정감사 및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2015. 7. 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국방부 소관)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35회 임시국회 (2015. 7. 8.~8. 6.)	2015.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국방부 소관)
	2015.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보고(기무사 기밀유출 관련)
제336회 임시국회 (2015. 8. 7.~8. 31.)	2015.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보고(북한의 DMZ 지뢰도발, 국정원의 해킹 의혹 관련)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015.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보고(최근 북한의 DMZ 지뢰·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및 향후 조치)
제337회 정기회 (2015. 9. 1.~12. 9.)	2015. 9. 10.~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감사(국방부 등 60개 기관)
	2015.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참모의장후보자(이순진) 인사청문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이순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보고(KF-X 사업관련)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5.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공청회
	2015.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2015.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7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계속) 군 급식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5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원 감사요구안
제337회 정기회 (2015. 9. 1.~12. 9.)	2015.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제338회 임시국회 (2015. 12. 10.~ 2016. 1. 8.)	2016. 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보고(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제재 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제339회 임시국회 (2016. 1. 9.~2. 7.)	2016.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현안보고(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제340회 임시국회 (2016. 2. 10.~3. 10.)	2016.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한민고 설립관련 감사결과 조치 보고
	2016.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
제342회 임시국회 (2016. 4. 21.~5. 20.)	2016.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보고(최근 북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제343회 임시국회 (2016. 6. 7.~7. 6.)	2016.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2016년 국방정책, 국방중기계획 등)
	2016.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보고(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현안보고(Kill Chain 및 KAMD 보고)
제343회 임시국회 폐회중	2016.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보고(사드(THAAD) 관련)
제344회 임시국회 폐회중	2016.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방위사업청 소관)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45회 임시국회 (2016. 8. 16.~8. 31.)	2016. 8. 29.	· 현안보고(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추진 경과)
제346회 정기회 (2016. 9. 1.~12. 9.)	2016. 9. 9.	· 긴급현안보고(북한 5차 핵실험 상황평가 및 대책) ·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 9. 29.~10. 14.	· 국정감사(국방부 등 60개 기관)
	2016. 10. 28.	· 현안보고(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2016. 11. 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2016. 11. 14. 2016. 11. 1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ㄱ

감염병 10, 11, 33, 62, 158, 187, 188, 190, 191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166
 고농축 우라늄 27
 공동육아나눔터 87, 185
 공세기동전 91
 공세적 통합작전 41, 87, 89, 94
 공수/특수작전 훈련 78
 과학화 경계시스템 46
 과학화 전투훈련 75
 국가군사전략 14
 국가비전 32, 35
 국가안보목표 32
 국가안보전략 14, 17, 32, 33, 35, 4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45
 국군외상센터 93, 114, 187, 189, 190
 국군의학연구소 190
 국군포로 168, 169, 170
 국무위원회 18, 23, 24
 국방 목표 34
 국방3.0 206
 국방개혁 17, 37, 51, 86, 87, 97, 109, 110, 112, 114, 115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114
 국방고등기술원 101
 국방과학연구소 93, 101, 102
 국방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 51
 국방규격관리체계
 국방규제개선 201, 202
 국방기술거래장터 103
 국방동원정보체계 50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6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94
 국방비 95, 96, 101, 109, 110, 111
 국방비전 34, 35, 36, 118, 135
 국방사이버안보전략서 66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131
 국방실험사업 118
 국방연구개발 37, 86, 99, 101, 102, 103, 112
 국방예산 12, 98, 99, 109, 101, 102, 109, 111, 115, 116
 국방우주력 63
 국방우주협력 63, 130
 국방운영 4대 중점 36
 국방인권모니터단 177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114
 국방전직교육원 192
 국방정보화기본계획 118
 국방정보화표준 120
 국방정신전력원 82
 국방정책 34, 35, 36, 98
 국방중기계획 98, 99, 111, 112, 113
 국방통합 온라인 공개강좌 74
 국방헬프콜센터 177
 국정기조 32, 33, 35

국제 침해사고 대응팀 협의회 11
 국제군수협력 126
 국제연합 15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158
 국제평화유지활동 12, 15, 37, 130, 138, 139, 142, 146, 150, 158, 159, 160, 161
 국제평화활동센터 159, 160, 161
 국제해양방위산업전 104
 국지도발 대비훈련 7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4
 군 보건 의료 발전계획 187
 군 인권지킴이 시스템 177
 군 책임운영기관 87, 115
 군비통제검증단 167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36, 139, 142
 군사시설 보호구역 203, 204
 군수통합정보체계 121, 124
 군수혁신 121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104
 군인복지 기본계획 179
 군인상호간 폭행·협박 처벌 특례 177
 군인연금 193, 194
 군인연금법 191, 194
 권역화 동원지정제도 50
 근접항공지원 43, 78
 글로벌 재난경보·조정 시스템 11
 글로벌보건안보구상 11
 기동군단 89
 기뢰작전 42

ㄴ

나라사랑 카드 180
 나진·하산 프로젝트 22
 남북 공동 유해 발굴 168, 170
 남북 군 통신선 165, 169
 남북 불가침 합의서 165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165
 남북고위급군사회담 164
 남북기본합의서 46
 남북당국회담 164, 165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통합작전 91
 네트워크 중심전 119

ㄷ

다국적 연합전술훈련 78
 다련장 41, 44, 46, 91, 94, 96, 97
 다자간 연합훈련 77
 대규모 전역급 종합훈련 78
 대량살상무기 11, 18, 23, 34, 56, 145, 147, 148, 149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148, 149
 대량응징보복 36, 60, 61, 92
 대륙간 탄도미사일 20
 대북제재 결의안 11, 21, 166

찾아보기

대잠작전	42	불가침부속합의서	46
대테러 군사동맹	11	비무장지대	20, 25, 164, 166, 168
대한민국 해외긴급구조대	70, 158	비상근 복무제도	50, 87
대함작전	42	비세그라드	142, 145, 146
독립국가연합	140		
독수리 훈련	81	人	
동명부대	150, 151, 152, 159	사드체계(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21, 61, 62
동미참훈련	199, 200	사이버공격	8, 10, 18, 33, 34, 48, 65, 6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33	사이버안보	66, 140, 142
동북아협력대화	147	사이버위협	10, 11, 15, 54, 65, 66, 67, 94
동원지정시스템	50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	15
동원훈련	199, 200	사회적 관심자원	198
		상호군수지원협정	126, 127
口		상호운용성	45, 60, 77, 87, 94, 119, 120
마일즈 장비	50, 75, 111	생물무기금지협약	147
메르스	10, 11, 62, 69, 70, 190, 206	생활밀착형 피복류	180
모성보호제도	185	서북도서방위사령부	42
모집병 제도	198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	104
무기거래조약	148	서울안보대화	66, 67, 136, 141, 143, 144, 145, 146
물류혁신	121, 122	성과기반군수지원	52, 116, 117, 121, 123
미래사령부	88, 133	성분훈련	76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47, 148, 167	성실수행 인정제도	107, 108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	57	세계군인체육대회	66, 137, 143
미일 방위협력지침	14, 15	생권 협정	8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53, 80	소요검증 제도	99
민·군기술협력사업	102	수리부속 운용혁신	122
민간개발 기본계획	116, 117	수색 및 구조훈련	77, 137
민간조리원	113, 117, 181	순항훈련	77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200, 201
ㅂ		스톡홀름 합의	22
방산수출	104, 105, 106, 127, 157	시설편제 관리체계	115
방어제공훈련	78	시차별부대전개지원	44
방위력개선비	95, 96, 111, 112	시험평가	98, 100, 125
방위력개선사업	98, 99	신속대응부대	42, 48, 65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34	신속억제방안	44
방위비분담금	133, 134	신속획득제도	115
방위사업	37, 98, 101, 106, 107, 108, 206	신형대국관계	8, 12
방위사업 혁신	106, 107	쌍룡훈련	79
방위사업법	98, 99		
방위사업청	98, 99, 100, 106, 107, 108	ㅇ	
방위협력확대협정	14	아라우부대	156
배타적경제수역	2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11, 21, 144, 147
배합작전	25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11, 66, 71, 144, 146, 160
병무청 심리검사	175	아시아 안보회의	142, 144, 146
병역 판정검사체계	199	아시아 패러독스	12, 13, 33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198	아크부대	157, 159
병영문화 혁신	110, 119, 174	아태 재균형 전략	8, 12
병영문화센터	87, 177, 183	야외기동훈련	20, 80, 8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93, 175	양성평등담당관	178
부대 정신교육	82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82
부사관 학군단	72	에볼라	10, 158, 190
북대서양조약기구	141, 142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	78
북방한계선	19, 20, 24, 46, 47, 77, 97, 164	연합토지관리계획	133

연합훈련 76, 77, 78, 79, 80, 126, 130, 139, 141, 157, 165
 예비군훈련 199, 201, 202, 206
 예비군훈련대 51, 200
 예비전력관리기구 51
 오쉬노부대 154, 159
 온누리부대 159
 외래검진센터 190
 용산기지이전계획 133
 우주상환인식 63
 원격진료체계 88, 114, 188
 윈스톱 군 물류지원체계 92
 유라시아경제연합 12
 유럽연합 8, 9, 141, 142
 유엔 남수단 임무단 152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151
 유엔군사령부(유엔사) 82, 168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49, 50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62, 63, 81, 131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 9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훈련 78
 임무형 지휘 76
 임무형 훈련 76, 77

ㄷ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8, 18, 20, 28, 97, 114, 166
 장거리 미사일 8, 11, 18, 20, 21, 22, 26, 28, 45, 86, 94, 131, 165
 장거리타격폭격기 15
 장병 사랑 캠페인 207
 장병사랑 재능기부은행 17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8
 적극적 평화주의 12, 15
 적정 국방비 109, 110, 111
 전략군 24, 27
 전력소요검증위원회 99
 전력운영비 111
 전력증강 94, 95, 96, 97, 98, 112, 115
 전력지원체계 120, 125, 126
 전문연구기관 99, 101, 126
 전문학위교육 73
 전사자 유해발굴 194, 195
 전사자종합정보체계 195
 전술정보통신체계 96, 97, 112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51
 전시작전 대비훈련 78
 전시작전통제권 37, 41, 88, 13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41, 88, 132
 전우사랑보험 제도 180
 전투지휘훈련 75, 76, 79
 전환·대체 복무 197
 정부3.0 206
 정비지원 혁신 122, 123
 정신건강증진센터 175
 정신교육 72, 74, 82, 83

정전협정 46, 150, 153, 165
 정찰용 무인항공기 41, 45, 58, 91, 95, 96, 97, 112
 경찰작성 45, 58, 91, 94
 제공작전 43
 제한보호구역 203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132
 종말단계 하층방어 59
 주한미군지위협정 62, 134
 주한미군사령부 43, 44, 133, 134, 135
 중국군 유해 송환 170, 171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53
 지뢰도발 207
 지상작전사령부 15, 89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53, 54
 지역군단 89
 지원예비군 50
 지카 바이러스 10, 11
 집단적 자위권 행사 12, 15

ㄹ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 196
 창조국방 86, 87, 207
 청해부대 154, 155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8, 10, 33, 34, 36, 37, 65, 158
 총수명주기체계관리 121, 125
 총무훈련 80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198

ㄴ

칸퀘스트(Khaan Quest) 훈련 141
 키리졸브 연습 81
 킬체인 36, 58, 59, 60, 92, 97, 112, 114, 133

ㄷ

다우러스 58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59
 태극연습 80
 테러 대비태세 65
 통제보호구역 203
 통합방위본부 53, 54, 80
 통합방위사태 49, 53, 54
 통합방위지원본부 53, 54
 통합방위태세 53, 54, 80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24
 통합화력 격멸훈련 76

ㄹ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 150
 포괄적 전략동맹 130
 폭력적 극단주의 9, 10, 11, 65
 플루토늄 27

ㅎ

찾아보기

한·뉴질랜드 국방협력약정	139
한미 지역모의센터	81
한국형 3축체계	36, 56, 58
한국형미사일방어	59, 60, 92, 97, 112, 114, 133
한국형전투기	92, 94, 96, 97
한려 해상사고 방지협정	138
한미 국방사이버정책 실무협의회	67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63, 130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36, 56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	126
한미 상호방위조약	44, 56
한미 생물방어 특별팀	63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57
한미 연합사단	131
한미 연합훈련	77, 78, 165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57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	126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합의각서	126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57
한미 해병대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	79
한미공동대응체계	45
한미군사위원회회의	131, 132, 133
한미군수협력위원회	126
한미사이버실무협의체	131
한미안보협의회의	56, 57, 88, 126, 131, 132, 133, 195
한미통합국방협의체	13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2, 33, 35
한빛부대	150, 152, 153, 159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	136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36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137
함정손상통제 훈련	78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81
합동참모본부	40, 87, 88
합참 테러 대비 종합발전계획	48
항공차단작전	43
항공차단훈련	78
해외긴급구호대	70, 71, 158
해외파병 상비부대	158
핵안보정상회의	148, 171
핵우산	56, 57
핵확산금지조약	10, 147, 167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	144
향방기본훈련	199, 200
호국훈련	80
화랑훈련	80
화전양면전술	18, 19, 21
화학무기금지기구	145, 147
화학무기금지협약	147, 167
확장억제	56, 57, 132
확장억제정책위원회	57
환태평양훈련	77, 79
희망준비금 제도	180

숫자

2·29 미·북 합의	21
4D 작전개념	57, 58
5·24 조치	168
8·25 합의	20, 165, 166

A

ADEX	104, 140
ADMM-Plus	11, 66, 71, 144, 146, 160
ARF	11, 71, 144, 147
ASS	142, 144, 146
ATT	148

B

BCTP	76
BSC	81
BWC	147

C

C4I	24, 48, 54, 65
CAS	43
CCWG	67, 131
CIS	140
CMCC	57
CNAP	15
CTIIC	15
CWC	147, 167

D

DMZ	20, 164, 165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164, 165
DPKO	159
DQ마크 인증	104
DRIS	51
DSC	57

E

EDPC	57
EDSCG	57
EEZ	21
EMP	95
EU	8, 141

F

Fast-Track	67, 93, 115
FDO	44
FE	20, 80, 131
FTX	81
F-X	43, 92, 94, 96, 97

G

GDACS	11
GHSA	11

H

HEU 28
HUAV 58

I

IA/CND SOP 67
ICBM 17, 28
ICT 37, 87, 107, 206
ISIL 9, 10, 11, 14, 65

J

JAM-GC 14
JCPOA 11
JDAM 58
JSTARS 78
JTS 81
JWSC 81

K

KAMD 36, 59, 92, 133
KF-X 43, 92, 94, 96, 97
KIDD 57, 131
Kill Chain 36, 58, 92, 133
KMEP 79
KMPR 36, 60, 92
KR 20, 80, 81, 131

L

LPP 133
L-SAM 62, 59

M

Max Thunder 78
MCM 131
MDL 47
MILES 75
M-MOOC 74
M-SAM 59, 62
MTCR 147, 148, 167

N

NATO 17, 141
NCW 119
NEACD 144, 147
NLL 19, 46, 47
NPT 10, 147, 167

O

OPCW 145, 147

P

PBL 52, 116, 117, 121, 123
PCA 8

PKO 12, 15, 138, 139, 146, 159, 160
PSI 148

R

Red Flag-Alaska 78
RIMPAC 77, 79

S

SAM 26, 59, 62
SAREX 77, 137
SCM 56, 88, 131, 195
SCWG 130
SDD 67, 144
SLBM 8, 97, 166
Soaring Eagle 78
SOFA 62, 134

T

THAAD 61
TICN 96, 97, 112
TPFDD 44

U

UAV 45, 91
UFG 63, 81, 131
UNIFIL 151
UNTSO 150

W

WMD 23, 34, 36, 57, 76, 86, 94, 111, 132, 148, 149

Y

YRP 133

QR코드 찾아보기



대한민국 국군
p40



육군
p41



해군
p42



해병대
p42



공군
p43



독도
p46



중부전선 최전선
비무장지대
경계근무
p46



최전방 철책 155마일
오늘도 이상없다
p46



한민구 국방부장관
연평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p46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
p57



우리들을 지키는 힘
주한미군 사드배치
p61, p224



해병대 1사단
특별경호대
대테러사격
p66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p68



무적의 전사들(여군)
p73



육군의 화력
p75



육군 특수전사령부
고공강하 훈련
p76



동해상 전투단
실사격 훈련
p77



해군 대공·대함·
대잠 사격훈련
p77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흑한기 훈련
p77



2016 다국적
연합전술훈련
(Red Flag-Alaska)
p78



2016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p78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p79



해군·해병대
합동상륙훈련
p79



한미 해병대 연합
공지전투훈련
p79



호국훈련
(남한강 도하작전)
p80



2016 블랙이글스
싱가포르 에어쇼
p104



서울 ADEX 2015
p104



미 B-1B 장거리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
p132



국방 교류협력
p136



한·미·영 공군
연합훈련
p141



2016 서울안보대화
p145



해외파병
p151



청해부대
무사트 훈련
p155



아크부대
특수직전 훈련
p157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
p164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국방부 브리핑
p166



경계부대
휴일연회
p177



국군 외상센터
설립 필요성
p189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p194



Thank you! Soldiers!
(지뢰도발 부상장병 격려)
p207